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김아름·박은영



연구보고 2020-04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저 자

김아름, 박은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04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54-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심각한 위협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건상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인과 아동이다. 특히 아직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온전한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 면역력 등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더욱 치명적이다. 분명 ‘K-방역’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대처방식은 현 시점에서 국제적 교본에 가깝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부와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우리 국민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분명 안주 속에서 위기는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에 본 백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보육정책 대응사항을 정리하고,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와 개선점을 일선 보육현장에서의 목소리와 함께 검토하였다. 본 백서가 향후 재차 발생할지 모를 보건상의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분들과 자료를 지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3. 연구의 제한점	12
II. 코로나19 특성과 정부의 대응체계	13
1. 코로나19 특성	15
2.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16
3. 코로나19 진행 경과	20
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22
III.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31
1. 보육관련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	33
2. 어린이집 내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39
3.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46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49
IV.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53
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관련 현황	55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61
3.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	63
4.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관련	68
5. 어린이집 지원 사항	72
6. 기타	80

V. 보육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87**

1. 코로나19 대응 평가 89
2.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5**

부록 **105**

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공문 내용 개정 경과 105
2. 정부의 코로나19 발생 단계별 이슈 정리 13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146
-



표 목차

〈표 II-3-1〉 2020년 8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21
〈표 II-4-1〉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	23
〈표 II-4-2〉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24
〈표 II-4-3〉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24
〈표 II-4-4〉 공공·민간행사 사례	26
〈표 II-4-5〉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26
〈표 II-4-6〉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28
〈표 II-4-7〉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29
〈표 III-2-1〉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사항 ..	40
〈표 III-2-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주요 대응사항 ..	43
〈표 III-3-1〉 코로나19 보육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및 주요 내용 ..	47
〈표 III-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50
〈표 III-4-2〉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51
〈표 IV-1-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55
〈표 IV-1-2〉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2.27.~5.31.) 중 긴급보육 이용률	57
〈표 IV-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8월)	59
〈표 IV-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9월) ..	60
〈표 IV-1-5〉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20년 1월~7월)	60
〈표 IV-2-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62
〈표 IV-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1	64
〈표 IV-3-2〉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2	65
〈표 IV-3-3〉 어린이집 소독 요령	67
〈표 IV-4-1〉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1	68
〈표 IV-4-2〉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2	69
〈표 IV-4-3〉 긴급보육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 개정 경과	71
〈표 IV-5-1〉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개정 경과	73
〈표 IV-5-2〉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관련 개정 경과	74
〈표 IV-5-3〉 대체교사 지원기준 관련 개정 경과	75
〈표 IV-5-4〉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78
〈표 IV-5-5〉 운영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79

〈표 IV-6-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운영 관련 내용 개정 경과	81
〈표 IV-6-2〉 어린이집 현장평가 관련 개정 경과	82
〈표 IV-6-3〉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개정 경과	83
〈표 IV-6-4〉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관련 개정 경과	84
〈표 IV-6-5〉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및 지급 절차	85



그림 목차

[그림 II-2-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17
[그림 II-2-2]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유증상자)	19
[그림 II-2-3]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무증상자)	19
[그림 II-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 ·	21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말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문제 및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음.
- 또한 유례없이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는 진정국면에 닿은 듯하였으나, 2020년 8-9월 재차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상황은 더욱 나빠짐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절한 대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각종 감염성 질병의 특성상 일률적 대처는 어려우나, 그때그때의 대응지침은 기관과 학부모에게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의 습관, 대처방법 등에 대한 공통의 지침마련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이 백서의 제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2020년 8월까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담당자들에게 상황에 따른 대응(시기별, 항목별)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정리하고,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다. 연구내용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의 보육정책 대응사항을 정리하고, 이 대응사항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순차적 정리와 항목별 내용을 검토함.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 요구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에 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함.

라.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코로나 3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며,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및 공문 등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체계의 애로점과 개선사항에 관하여 분석함.

마.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수의 자료는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비공개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공개자료의 인용을 원칙으로 하는 연구윤리의 준수에 한계가 있고, 2020년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차 확산 추세이나 연구완료 일정상 9월 초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포함하지 못하였음.

2. 코로나19 특성과 정부의 대응체계

가. 코로나19의 특성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눈, 코, 입 등의 점막, 호흡기 등을 통해 감염되고, 주로 발열과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으며,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히 고령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임.

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시기별로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여, 입국 시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14일간의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유증상자 혹은 무증상자의 여부에 따라 즉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서로 상이한 조치를 취함.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에 관한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CCTV, 핸드폰 위치 정보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확진자 혹은 접촉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함.
- 우리나라에서의 진행경과는 2020년 1월 19일 최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대구·경북지역의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났으며, 5월 초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매개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던 중, 8월 중순 서울 한 교회의 집회활동 및 휴가철을 계기로 재차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는 2020년 1월 19일까지 '관심단계', 동월 20일부터 '주의단계', 동월 27일부터 '경계단계', 2월 23일부터는 '심각단계'로 점차 격상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의 대응 지침에 따라 모임, 집회 등의 부분적 제한 및 금지는 물론 자영업 등에 대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

3.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가. 보육관련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

- 보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등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소위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 있으며, 감염성 질환 등의 경우 각 법률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의 역할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 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휴원 내지 일시폐쇄 등의 돌봄공백 상황에 대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어린이집 내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 어린이집 내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대응방법(입구에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등을 안내하였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경우 등원을 자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다.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 휴원 및 긴급보육, 어린이집 지원 방안, 보육교사 고용유지, 지자체별 휴원 등의 개별 조치를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조치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함.

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본적으로 정상 등원하며 단지 외부인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는 휴원을 권고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돌봄을 권고하되 긴급보육을 병행 실시하며, 3단계는 휴원명령이 원칙이며, 긴급보육의 경우에도 최소화하도록 함.

4.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관련 현황

-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8월 중순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 이용률'을 살펴봄.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민간, 법인 등) 개소 수를 확인한 결과, 3월부터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육공백 등에 대한 대비방안이 필요함.

나.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직후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본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후 7차례의 개정 및 추가대응지침을 배포함.

다.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

-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발열체크, 증상 있는 경우 대상자의 휴원 및 업무 배제를 권고하였고, 어린이집에서의 소독 요령 안내, 마스크 착용 지침, 어린이집의 일시폐쇄 및 휴원과 관련하여 사유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마련함.
- 또한 가정돌봄 시 출석을 특례로 인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대체교사의 지원기준 특례의 마련과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및 휴원 시 유급휴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어린이집 지원방안을 마련함.
- 그 외에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과 어린이집 현장평가의 연기 및 평가 유효기간 연장, 영유아 부모교육의 대응 안내,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함.

5. 보육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가. 코로나19 대응 평가

- 종래 우리가 경험한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종료시점과 파급효과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양함.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코로나19의 대처와 방역에 관하여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 어린이집 대응에 있어서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빈번하게 관련 상황과 대응지침을 안내함으로써 발빠르게 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고,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이룬 시점에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적극적인 휴원명령을 통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확산을 저지하였음.

나. 향후 과제

-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폐쇄 명령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예방조치의 발동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휴원명령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보육의 이용조건 및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현재 긴급보육이 시행된 상태에서도 실제 정상보육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에서의 문제(과밀화 등)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 밖에도 영유아 및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수칙 홍보자료 개발, 휴원 시 가능한 프로그램 명확화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03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확진자가 이만 명이 넘게 발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만 약 2580만명, 사망자는 약 86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¹⁾ 또한 이 여파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보건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같은 기본권 일반론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때에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은 비단 성인들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의 아동에게도 커다란 스트레스 상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영유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휴원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안전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8차례 이상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다만, 영유아 시기의 신체적·환경적 다양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

1) 머니S,(2020. 9. 2일자 기사)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580만명·사망자 87만명,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0208198098353>(2020. 9. 15. 인출)

이 갑작스럽게 확산된 감염병 등의 위급상황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각종 감염병 및 질병은 그 고유의 특성상 다른 여러 증상 또는 예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당연히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기관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일시적 혹은 그때그때의 대응지침은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세부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달리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어린이집 등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보다 안정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생활의 습관, 대처방법 등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생의 철저화 및 예방 및 보호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개별 지침 혹은 예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현재 코로나19사태가 진행되는 경과뿐만 아니라 개별 대응에 따른 대처방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대처의 신속화, 전파의 최소화 등의 목적달성에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보육 담당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기별(위기단계 또는 확산수준별), 항목별(방역/지원, 보육/가정양육 등)로 자료를 정리하여 보육정책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의 보육정책 대응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진행경과에 따른 정부의 대응사항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출입제한, 소독, 위생관리,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교육 등 아동·교직원 안전강화), 어린이집 휴원 및 일시폐쇄 시 수반 조치, 어린이집 지원 사항(보육료, 인건비, 수당 등) 등이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 요구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통해 사후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침이나 대응방법이 적절하였는지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 등의 의견 수렴과 개선사항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에 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 대비한 보육정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보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관련 법률에 법제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으며,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에서의 의무사항 등 관련 법률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공문 등을 검토하여 보육 지원 조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따른 기관에서의 필수 대응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응체계상의 애로점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고, 실제 디자인 편집 등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도출하여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다른 일반 정책과제와는 달리 내용 서술 보다는 최대한 표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 담당 보육관에게 내린 공문은 비공개자료로서 접근이 어려우며, 휴원명령과 비품 지원 등은 각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자체 상황마다 다르게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대다수의 자료가 보건복지부의 협조에 따라 받은 내부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연구윤리상 공개된 자료 인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을쯤 발생할 것이라 예견된 2차 팬데믹을 염두하고 코로나19의 대응과정을 각 재난위기 경보별(관심·주의·경계·심각)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1단계·2단계·3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연구기간 동안 재난위기 상황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사실상 6월 2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2단계를 유지하다가, 연구종료 시점에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3단계 격상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종료 시점인 9월 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II

코로나19 특성과 정부의 대응체계

- 01 코로나19 특성
- 02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 03 코로나19 진행 경과
- 0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II. 코로나19 특성과 정부의 대응체계

1. 코로나19 특성²⁾

코로나19(Corona virus 19; COVID-19)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광범위하게 호흡계 및 소화계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코로나) 모양의 돌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형을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라 명명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 ‘우한 코로나’ 등으로 불렸으나,³⁾ 세계보건기구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부정적인 원인을 이유로 이 바이러스의 국제명칭을 ‘코로나19(COVID-19)’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2일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 공인된 국제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인 보건문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19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최초로 확진되며, 이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되었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초기 보고된 형태(SARS-CoV-2)와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변이를 일으킬수록 그 감염력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⁴⁾

2) 이하의 내용은 의협신문(2020. 2. 12일자 기사), 政,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명명,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04>(2020. 8. 25.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2020. 8. 25. 인출) 참조.

3) 조선일보(2020. 2. 29일자 기사), 전 세계 ‘우한 코로나’ 확진자 8만명 돌파... 52개국 피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9/2020022901525.html(2020. 8. 25. 인출).

4) 한국경제(2020년 8. 31일자 기사), 인도네시아서 전염력 10배 강한 코로나 변종 발견,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3135527>(2020. 8. 31. 인출) 참조.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을 통하여 눈, 코, 입 등의 점막이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함으로써 감염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37.5℃) 및 기침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권태감,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노년층의 기저 질환에 따라 다양한 예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률은 49.84%, 치명률은 21.4%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국가별, 연령별로 매우 상이하다.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주로 중증으로 번지거나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⁵⁾

다만 코로나19에 의한 영유아의 피해는 성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⁶⁾ 다만 성인들에 비하여 타인의 접촉이 적고, 성인에 비하여 외출 등의 빈도가 적은 이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⁷⁾

가. 정부조직

우리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 컨트롤타워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를 가동하여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 (2020. 8. 27 인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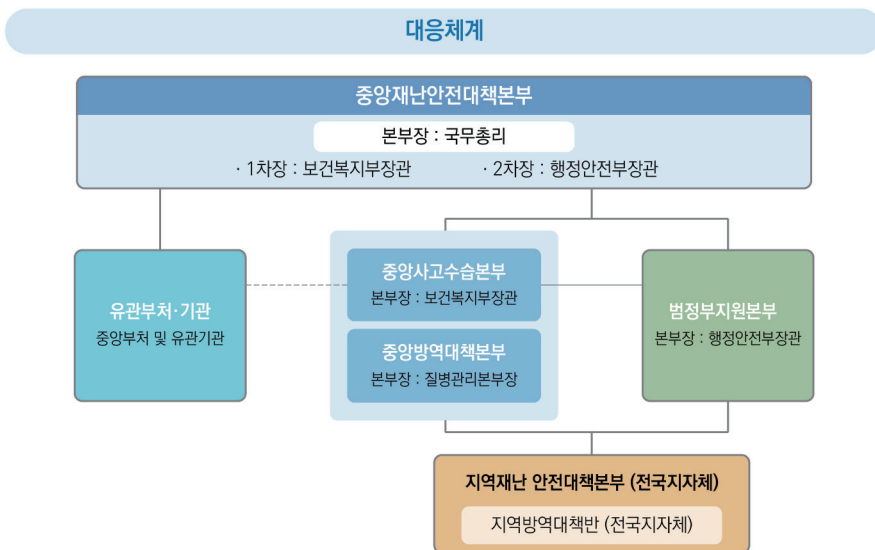
6) BBC NEWS|코리아(2020. 2. 11일자 기사), 신종코로나: 어린이들은 왜 신종코로나에 잘 감염되지 않았을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454070>(2020. 8. 31. 인출) 참조.

7) 본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대한민국 방역체계.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장관)으로 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림 II-2-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한국 정부 대응체계(2020년 2월 25일 기준).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

나. 해외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1)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의 차단(특별입국절차)⁸⁾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유입 초기인 2월부터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특히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전체에게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다.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하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참조, 한국정부 대응체계(2020년 2월 25일 기준). <http://ncov.mohw.go.kr/baroView2.do>(2020. 8. 17 인출).

여 사증심사 절차를 강화하였고,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동월 12일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하던 홍콩, 마카오 지역에도 이를 확대하였다. 이후 3월 9일 일본, 동월 12일 이란과 이탈리아, 동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하루 뒤인 16일부터는 유럽 전역을, 19일부터는 전 세계의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다.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입국 시에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때 특별입국대상자는 국내에서의 연락처와 거주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국자의 동선과 연락처를 명확히 파악하여,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국 후 발열 등의 감염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게 하여, 입국 후 2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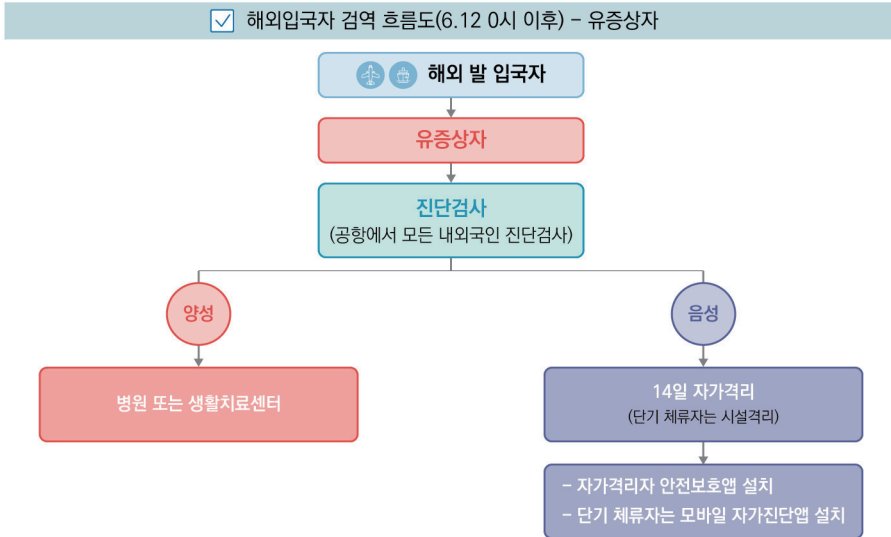
2)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⁹⁾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및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수)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국 시에 유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의 시설격리를 실시하였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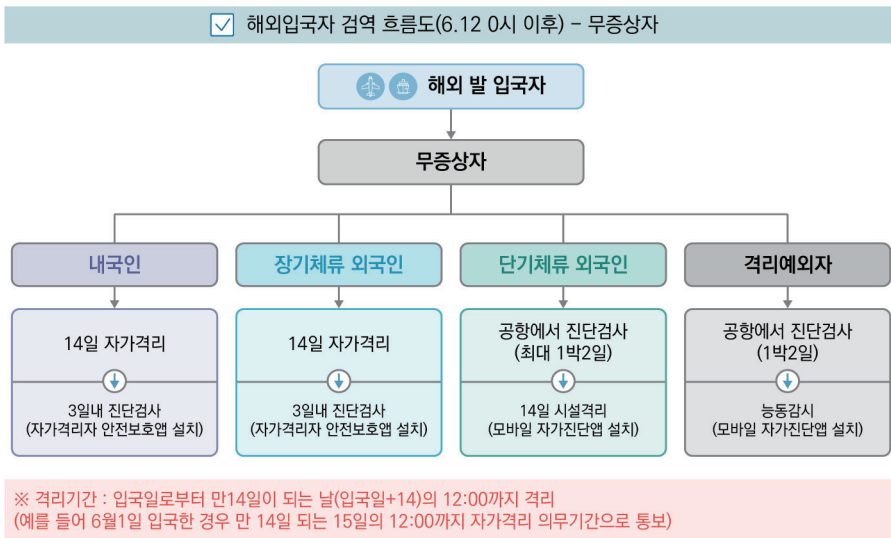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참조, 한국정부 대응체계(2020년 2월 25일 기준). <http://ncov.mohw.go.kr/baroView2.do>(2020. 8. 17 인출).

[그림 II-2-2]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유증상자)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2020년 6월 12일 0시 이후).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

[그림 II-2-3]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무증상자)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2020년 6월 12일 0시 이후).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

3) 감염자에 대한 의료체계¹⁰⁾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이가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 총 118개소에 진단검사소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단방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핸드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이력, CCTV 등과 같은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함으로써 혹시 모를 확진자의 접촉에 대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가격리(14일간)와 진단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전 방역과 예방에 최우선 과제를 두었으며,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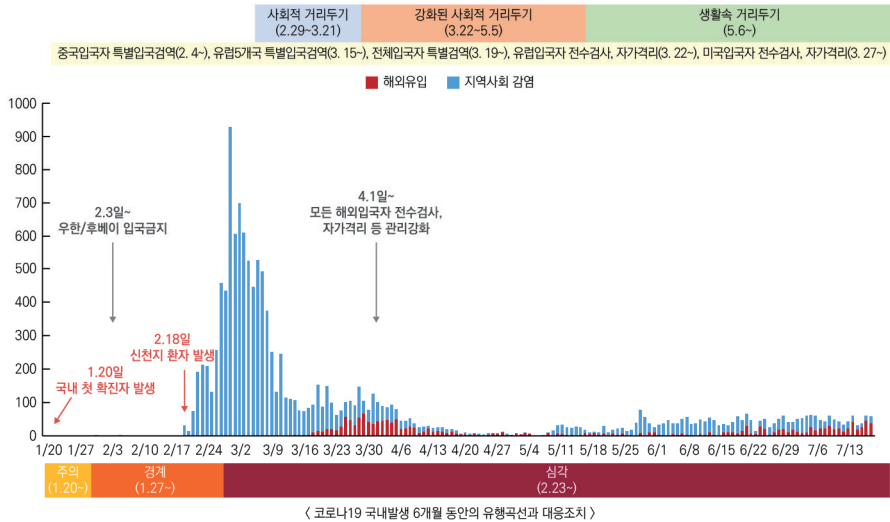
3. 코로나19 진행 경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발생 초기에는 일부 중국지역의 입국자와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발병이 일어났다. 이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으나, 전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생활방역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바 있다. 이후 완화된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나, 5월 초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매개로 하여 서울, 인천 지역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학원, 노래방 등 밀집·밀폐·밀접 시설 내의 n차 감염의 확산으로 유행 연결 고리가 이어져, 8월 중순까지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¹¹⁾ 이후 여름 휴가철과 서울 강북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집회 등을 통하여 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대규모의 재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참조, 한국정부 대응체계(2020년 2월 25일 기준). <http://ncov.mohw.go.kr/baroView2.do>(2020. 8. 17 인출).

11) 감염병 뉴스레터, 코로나 19 국내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조치.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825&s_keyword=&s_where=&start=10&target_self=yes(2020. 8. 17. 인출).

[그림 II-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



자료: 감염병 뉴스레터, 코로나 19 국내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조치,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825&s_keyword=&s_where=&start=10&target_self=yes(2020. 8. 17. 인출).

<표 II-3-1> 2020년 8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날짜		코로나19 진행 내용
월	일	
1	20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27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국내유입)'에서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1.30, 1.31, 2.11)
2	8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18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1	대구·경북 청도·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3	감염병 위기경보(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26	국회, 코로나3법 통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3	15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4	1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2020년 4월 9일 고3·중3 수험생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27 ~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날짜		코로나19 진행 내용
월	일	
5	1 ~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5.4~8.18) 지급
	6 ~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 등교개학,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26 ~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6	10 ~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18	마스크 5부제 폐지(6.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
	28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7	12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폐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경기지역(8.16 ~ 8.30), 부산시(8.17 ~ 8.31)
8	18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8월 19일 ~)
	21. 0시~ 30. 24시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23. 0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30. 0시~	수도권 유·초·중·고 8.26일 부터 9.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 고3 제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9.6일까지)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2020. 8. 25. 인출) 내용 참조.

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이에 정부에서는 확진자의 수와 공중보건상황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기상황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먼저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대되던 1월 중순까지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1월 20일부터 '주의 단계'로 변경되었다. 그 후 확진자가 소규모나마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1월 27일 부터는 단계를 '경계 단계'로 향상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2월 23일부터는 단계를 '심각 단계'로 향상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단계 속에서도 1, 2, 3단계로 나누어 모임, 집회,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II-4-1〉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

감염병 위기 경보	기간	내용
관심	~ 1. 19	
주의	1. 20 ~ 1. 26	1. 20 국내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상향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 가동
경계	1. 27 ~ 2. 22	1. 27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국립중앙의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2. 3 우한/ 후베이 입국 금지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배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및 휴원 기준 안내 2. 18 신천지 환자 발생
심각	2. 23 ~ 3. 21	2. 2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 25 전국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전수 조사 실시
		2. 26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3. 3 대구, 경북지역 고강도 방역대책 지속
		3. 4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 진료소 표준 운영지침 마련
		3. 5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3. 22)
		3. 7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도입
		3. 9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3. 22 ~ 5. 5	3. 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3. 22 ~ 4. 5)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통보
		4. 1 모든 해외 입국자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4. 5 아동 양육 가구에 돌봄쿠폰 지급
		4. 5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4. 6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 6 ~ 4. 19)
		4. 9 단계적 온라인 개학 실시
		4. 28 안심밴드 도입 및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동작감지 기능 추가
		4. 29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4. 29 ~ 5. 5)
		4. 29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5. 6 ~ 8. 15	5. 6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5. 20 유치원, 초·중·고교 순차적 등교
		6. 8 전학년 등교수업 시작
	8. 16~	8. 16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8. 23~	8. 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주간)
	8. 30~	8. 30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사실상 2.5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page=2 (2020. 8. 30. 인출) 참조.

〈표 II-4-2〉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자료: 보건복지부(2020. 1. 20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자 발생, p. 7.

〈표 II-4-3〉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명)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주: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수가 전일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p. 7.

가. 방역수칙 단계별 대응¹²⁾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같은 것으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

12) 단계별 대응체계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또한,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며,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표 II-4-4〉 공공·민간행사 사례

-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표 II-4-5〉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주: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앙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합금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의 집합 금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면회 금지 그리고 목욕탕, 공연장, 종교시설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와 집합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¹³⁾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즉,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13) 연합뉴스(2020년 8월 3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https://www.yna.co.kr/view/GYH20200830001600044>(2020. 8. 30. 인출) 참조.

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I-4-6〉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이·미용실, 소품물,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p. 27.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단계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각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표 II-4-7〉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p. 28.

III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 01 보육관련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
- 02 어린이집 내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 03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 0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III.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1. 보육관련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

가. 보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등의 법적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전단),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동법 제31조 제2항),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2항).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5항).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는 감염병의 범위와 신고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p.105). 코로나19의 경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므로, 지침(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지침은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 받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5. 29).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43조의2 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의2 제2항). 이러한 휴원명령의 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43조의2 제3항), 입법미비 상태이다. 휴원명령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등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7의2).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a: p.77).

2)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국회는 지난 2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 소위 ‘코로나 3법’을 개정하였고, 이 법률들은 3월 4일 공포되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필

요한 3가지 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¹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 및 강제처분이 가능하게 되었고,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였다(제79조의3).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 우려 시, 의약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하여(제40조의3 제1항) 당시 국내 공급이 부족하던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의료인 및 약사 등은 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두었고(제76조의2),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제49조의2 제1항).

검역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4조)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였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서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제36조 제13호)와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47조 제8항),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감염 예방관리, 필요한 조치·계획수립,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제47조 제13항) 코로나19 감염체계를 촘촘히 하였다.¹⁵⁾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감염병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동법 제1조 및 제2조 제2호 타목).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14) 법제처 포스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50430&memberNo=5011620&vType=VERTICAL>(2020. 8. 27. 인출).

15) 법제처 포스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50430&memberNo=5011620&vType=VERTICAL>(2020. 8. 27. 인출).

시행규칙 제8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특히,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유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2항).

한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호). 이에 따라 어린이집 내 교직원이나 아동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 제2의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49조의2 제1항). 그리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만 해당한다(동법 제5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그 밖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2항).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나. 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휴원 내지 일시폐쇄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¹⁶⁾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기 이전 허용범위는 연간 최대 10일이며, 무급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자녀양육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만 5천원을 일괄 지원)하였다.¹⁷⁾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 등의 휴업·휴교·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2020년 9월 8일 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16) 코로나19 긴급조치 ⑥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모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69(2020. 8. 27. 인출).

17)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75(2020. 8. 28. 인출).

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또한,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5항 신설), 사실상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로 확대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인데,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다. 남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씩 사용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¹⁸⁾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임신, 육아, 자녀돌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각각 최대 1년간 지원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여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데,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활용 횟수에 따라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돌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¹⁹⁾

18)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75(2020. 8. 28. 인출).

19)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75(2020. 8. 28. 인출).

2. 어린이집 내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²⁰⁾

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2020. 1. 27 ~ 2. 22)

1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하자,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배포하였다. 어린이집 대응요령은 외부인 출입금지, 등하원 시 마스크 착용 권장 및 등하원 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자제, 감염병 의심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였고,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사유를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2월 3일에는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하여 어린이집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2월 5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소독 요령을 안내하여 어린이집 내 자체소독 시행 시 일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

20) 이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내부자료와 각종 공문의 내용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시기별로 정리하였음.

〈표 III-2-1〉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대응사항

기간	종합적 대응사항 요약	
	일시 및 공문 제목	주요 내용
1 월 말 ~ 2 월 초 : 1.27.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상향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조치	
	1.28.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 공문	손씻기·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 외부인 출입금지, 발열체크, 외부행사 자제 등 대응요령 안내 - 후베이성 방문 아동·교직원 등 입국 후 14일간 등원·출근 중단, 그 외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은 등원·출근 자제
	1.28. 코로나19 결석 시 출석 인정 특례 지원	감염 증상 또는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하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 시 인건비, 수당도 정상시와 동일하게 지원
	1.28. 코로나19 관련 담임교사 지원비 등 지급기준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사 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비용지급 기준 마련 -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시 현행 근무일수 관련 지원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업무배제되는 경우 등에도 근무일수에 포함
	1.29.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현행 대체교사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 * (현행)최대 10일→(변경)감염증 완치시까지 또는 최대 14일 * 보육교사의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지원, 보육교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방문자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지원
	2.3.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 1판 배포	중국* 방문자 등원·출근 중단, 위생수칙 및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요령 안내, 외부인 출입자제, 행사·교육 중단 조치 * 1.28. 후베이성 → 2.3. 중국 전역으로 확대
	2.3.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아동 또는 교직원 본인이 확진자·접촉자일 경우 일시폐쇄(출입금지)하도록 기준 마련, 안내 - 아동 또는 교직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이거나, 그 외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휴원(긴급보육 실시)하도록 안내
	2.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안내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의 현원기준 적용 유예하고, 일시폐쇄 및 휴원할 경우 해당 기간 보육교사 유급처리
	2.5.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도록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7. 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조치 상황 및 계획. 참고2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 각종 공문 내용을 보완함.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 2. 23 ~)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뒤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캠페인 내지 감염 통제조치를 시행하였는데,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기 시작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였다. 이에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뒤 보건복지부는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것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원아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을 명령하였다. 이후 3월에도 휴원명령을 연장하여 휴원 상태를 지속하였다.

1)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020. 3. 22~ 4. 19)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휴원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긴급보육 실시를 강화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긴급보육의 경우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 의무배치, 급·간식 정상 제공, 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긴급보육 시에도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제한, 매일 소독, 유증상 교직원·아동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등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긴급보육 운영으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 가운데 긴급보육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원내 밀집도를 낮춰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밀

집도 완화를 위해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보육시간 내외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 영유아 대상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도 등 긴급보육 이용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 강화사항을 안내하였다.

2)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020. 4. 20 ~ 5. 5)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2020. 5. 6 ~ 8. 22)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실시되자, 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물품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6월 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휴원을 연장하였다. 6월 22일부터 7월17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 5-1판을 배포하였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 8. 16 ~) 및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 8. 23 ~)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다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8월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8월 23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를 요청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및 접촉 최소화 실천을 위한 보호자 협조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가정통신문은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로 제한하고 보육시간도 꼭 필요한 시간으로 단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 8. 30 ~)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30일(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역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이도록 하였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되며,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표 III-2-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어린이집 방역 관련 정부의 주요 대응사항

기간	종합적 대응사항 요약	
	일시 및 공문 제목	주요 내용
2월 중순~2월말: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 시 필요사항 안내 및 모니터링,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2.23.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이 증가함에 따라 휴원시 아동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휴원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매일 1회), △재원 아동의 돌봄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보고
	2.23.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관련 안내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이며, 이는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3월 신학기 입소 등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
	2.2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27(목)부터 3.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긴급보육 이용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3월: 휴원 지속	휴원 지속에 따른 방역 강화, 물품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사 복무 관련 법령 준수 요구 등 각종 상황 관리 병행	
	3.2.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재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인건비 정상지급 입소아동 감소의 경우에는 현원기준 유예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기간	종합적 대응사항 요약	
	일시 및 공문 제목	주요 내용
	(3.5., 3.17., 3.31.)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당초 예고된 휴원기간 2.27. ~ 3.8.을 3차례 연장 (1차: 3.5. → ~ 3.22. / 2차: 3.17. → ~ 4.5. / 3차: 3.31.: 재개원 시기 추후 결정)
	3.16. 부모보육료 결제 요청	긴급보육 시 인건비, 운영경비 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모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보호자 대상 안내(가정통신문)
	3.17.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휴원기간 일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정상 급여를 지 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데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요구 △휴원기간 출근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유급휴가 부여, △임금 미지급,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시 근로 기준법상 처분 가능, △국고지원 인력에 대해 임금 정상 지급 않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처벌 가능
	3.19.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4판 배포	△각종 활동, 급·간식 시 일정 거리 유지, 물품 교차 사 용 금지 등 접촉 최소화, △보건용 마스크 사용 기준 안 내, △주기적 환기 강조, △아동·교직원 건강상태 기록 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3.27. 비상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 및 개원 대비 비상용 마 스크 284만 매(아동·교직원당 2매, 28.4억원) 현물 지원
	긴급보육 이용률 상승에 대응하여 방역 지원 및 조치 강화 실시	
4월: 휴원 장기 화	4.1. 긴급보육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전체 어린이집 중 609개소(시·도, 유형 고려하여 배분, 선정) 방문·유선 모니터링 실시
	4.9. 긴급보육 시 추가 대 응지침 안내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권 장하는 등 밀집도 완화, △미등원 아동 및 보호자 대상 교재·교구 제공 권장,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수시 소 통, △급·간식, 낮잠 시 일정 거리 유지, 개별놀이 중심 운영 등 접촉 최소화, △영유아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 도, △경증 유증상자도 등원·출근 제한
	4.9. 차관-어린이집 단체- 지자체 영상 간담회	휴원 및 긴급보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 종사자 격려 및 방역사항 준수 당부
	4.13. 어린이집 운영비 추 가 지원 방안 안내	3월 대비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3월 수준의 보조금(기관보육료·누리 운영비) 유지 지원 안내 * 4월말 최초 지급, 전국 휴원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까 지 지원 * 교사 임금 지급 위반, 고용유지 미이행,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21. 체온계 등 지원	코로나19 대비 매일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관리 강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물품 92.2억원 지원
	4.27. 차관 어린이집 현장 방문	방역 및 긴급보육 현장점검, 방역사항 준수 당부 및 종 사자 격려 메시지 전달

기간	종합적 대응사항 요약	
	일시 및 공문 제목	주요 내용
5월: 개원 대비	방역 모니터링 실시, 방역물품 구비 점검	
	4.20.~5.1. 개원 대비 모니터링	어린이집 자체점검 약 3만 6천개소 전체, 지자체 현장 점검 10%, 복지부 합동점검 8개 시·도, 16개 어린이집 대상 대응지침 이행 여부 현장점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일일건강상태 체크,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접촉 최소화 조치, △격리실 구비 여부, △소독 및 환기, △방역물품 비치 등 점검
	5.11.~15.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이행상태 점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방역관리 사항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연장교사 채용 등) 관련 재점검
	5.11.~15. 방역물품 구비 확인	△보건용 마스크 보육교직원, 아동(0세 제외) 1명당 2개 이상 비축, △손소독제 등 어린이집별 1일 1개 이상, △체온계 어린이집별 1개(현원 50인 이상 2개) 등 旣 지원한 방역물품 구비 확인
6~7월: 개원 후 상황 관리	5.27.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5판 배포	△특별활동 제한적 허용(휴원지역은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구체화(교직원은 아동 등 접촉 시, 유아는 집단 활동 시), △냉방기기 가동 시 2시간마다 환기 원칙 명시
	전국 단위 휴원 해제, 현장점검	
	6.1.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전국 단위 휴원 해제, 지자체별 휴원 결정 방식으로 전환
	6.22.~7.17. 어린이집 현장점검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7.21.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5-1판 배포	△내부순환 방식 공기청정기 가동 제한, △휴원지역 특별활동 허용, △유증상 확진자는 격리해제 2주 후 출근·등원 가능 등 휴원해제 후 방역상황 변화 반영
	8.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어린이집의 방역물품 구비 현황 파악 및 비축 지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및 방문이력 관리
	8.25. 어린이집 이용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공문	△어린이집 휴원시 가정돌봄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과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 △보호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개인방역 철저, △가정보육시 이용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안내 등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 작성 배포
	8.31.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5-2판 배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일시폐쇄 기준 현실화,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보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7. 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조치 상황 및 계획. 참고2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 각종 공문 내용을 보완함.

3.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²¹⁾

가. 방역 조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다.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지침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대응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20.4.20~5.1(1차), 5.11~21(2차), 6.22~7.17(3차))하였다. 방역물품의 경우 3차에 걸쳐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을 지원하였는데, 1차(2.29)에는 마스크·손소독제 65.6억원, 2차(3.27)에는 비상용 마스크 284만매 현물 지원 28.4억원, 3차(4.21)에는 체온계 등 92.2억 원어치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나. 휴원 및 긴급보육

감염병 위기단계 등을 고려하여 일시폐쇄·휴원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였으며,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의 경우에도 정상출근·정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어린이집 지원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아동의 경우에도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정원 50% 충족, 전자출결설치 등)을 유예하고, 코로나로 인한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등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라. 보육교사 고용유지

교사 고용유지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누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휴업·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2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7. 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조치 상황 및 계획을 참조함.

마. 지자체별 휴원

6월 이후, 전국 단위 휴원은 해제하였으나, 지역별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휴원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서울·인천·광주·대전·경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휴원을 지속하였으며, 7월 27일 기준으로 평균 등원률이 85.3%였다.

〈표 III-3-1〉 코로나19 보육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및 주요 내용

연번	보도자료 날짜	제목	주요 내용
1	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 -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권고 -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2	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예비비 확보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3	2020. 3. 17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 -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가능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반(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 실시

연번	보도자료 날짜	제목	주요 내용
4	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 -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 - 긴급보육 아동 증가 및 개원 대비 어린이집 내 비상용 마스크 284만 매 현물 지급,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
5	2020. 4. 9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라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밀집도 완화 등 조치 -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월 29일 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 6일 28.4억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 -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 시행 △밀집도 완화,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등원·출근 제한 강화, △건강상태 수시 확인, △영유아 위생수칙 지도, △점검 등
6	2020. 4. 10	아기상어와 함께 손 씻기 노래 불러요!	□ 아기상어 캐릭터와 노래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영상 제작 -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 대상으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4월 10일(금)에 유튜브를 통해 송출 - 이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함
7	2020.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 4.20(월)부터 5.1(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 (코로나19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기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2회 이상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 - (강화된 방역조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등원시 독립반 편성 운영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 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8	2020. 4. 27	김강립 차관, 어린이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격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4월 27일(월) 대전 유성구 소재 '하늘새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및 긴급보육 현황을 점검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을 격려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은 전국 휴원 이전 1건(2.22, 대구, 교직원→아동 감염)

연번	보도자료 날짜	제목	주요 내용
9	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 해제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28.4%(3.23.)→55.1%(4.23.)→72.7%(5.29.) - 전국 단위 휴원은 해제,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휴원 가능 - 수도권 지역은 현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 -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
10	2020. 8. 28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2020. 8. 30. 인출).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1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배포하였다.

1단계가 실시되는 경우 기본방향은 정상 등원이므로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외에는 평소 운영과 큰 차이가 없다. 2단계로 상향되는 경우 휴원을 권고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돌봄을 권고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그 외에 특별활동과 외부활동은 제한되며,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 3단계가 실시되면 휴원명령이 원칙이며, 긴급보육의 경우에도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등은 금지된다.

〈표 III-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기본 방향	정상 등원	휴원 권고 긴급보육 실시, 가정 돌봄 권고	휴원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권고
접촉의 최소화	(특별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특별활동) 자제 원칙,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 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특별활동) 금지
	(외부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외부활동) 자제 원칙,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 및 교육)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원칙,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외부인 출입)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이외의 사항은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1판에 따라 방역조치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250, 2020. 8. 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한편,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르면, 긴급돌봄의 경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한되며,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하여야 한다. 특별활동과 집단행사, 외부인 출입 등도 금지된다.

〈표 III-4-2〉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휴원	휴원 권고	휴원
긴급보육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실시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IV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 0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관련 현황
- 0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 03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
- 04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관련
- 05 어린이집 지원 사항
- 06 기타

IV.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관련 현황

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년 2월~8월)

〈표 IV-1-1〉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단위: 명)

시기	구분					합계
	교직원		아동		기타	
	확진	접촉	확진	접촉		
휴원 해제 전('20년 2월~5월)	23	15	6	18	6	68
휴원 해제 후 ('20년 6월~8월 15일)	22	19	16	28	0	8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후 ('20년 8월 16일~8월 27일)	25	22	39	48	1	135
합계	70	56	61	94	7	28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어린이집 내 코로나 19 확진자의 발생 현황은 크게 정부의 시기별 대응정책에 따라 3가지 구분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 휴원 해제 전 단계', 동년 6월부터 8월까지의 '휴원 해제 후 단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른 8월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명령하기 이전인 5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직원이나 아동이 확진 및 접촉한 사례는 주로 대구와 경북 그리고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 발생보고는 총 68건으로, 이중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것은 총 38건이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은 25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주로 확진자인 가족이나 지인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서 분류되었고, 이를 매개로하여 바이러스는 어

린이집에까지 전파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23건이었으며, 나머지 40건은 보육교직원 등의 구성원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종교집단에 의해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던 휴원 해제 전(2월~5월)단계와 달리 이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인 7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이 시기 전체 보고된 62건 중에서 19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소규모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43건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에 발생이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도 아동이 직접 감염 혹은 접촉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파된 것은 31건이었고, 보육교직원에 의해 전파된 것도 31건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8월 이후에 보고된 총 120여건의 사례에 있어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 수도권에서는 총 100건의 발생사례가 보고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20건이 보고된 것이 전부였다.

어린이집 내에서의 시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바이러스의 확산은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내에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대책의 수립 시에는 바이러스 발생의 보고 초기 신속하게 해당 지역과 인근 광역도시, 생활권 지역에 대한 방역,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 이용률

전국적으로 휴원명령이 내려진 2월 말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2〉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2.27.~5.31.) 중 긴급보육 이용률

시도	기준 월	3월말	4월말	5월말
전국		31.5%	57.0%	72.7%
서울		32.4%	58.0%	69.0%
부산		21.0%	46.4%	72.0%
대구		5.8%	29.4%	53.7%
인천		32.8%	57.5%	61.4%
광주		45.5%	72.3%	86.7%
대전		31.0%	55.7%	69.7%
울산		22.1%	54.9%	77.6%
세종		23.9%	51.6%	77.8%
경기		33.2%	56.0%	72.5%
강원		37.6%	66.0%	81.6%
충북		30.8%	58.8%	74.8%
충남		31.2%	61.1%	80.6%
전북		48.7%	71.0%	83.5%
전남		43.2%	75.0%	90.0%
경북		17.6%	47.1%	67.5%
경남		29.4%	54.1%	70.5%
제주		50.5%	76.8%	83.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위의 표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점차 안정세를 찾은 4월과 5월의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특정 종교집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월 중순이었다. 이때의 여파로 인하여 3월 대구, 경북 등의 경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3월 대구는 5.8%, 경북은 17.6%로 나타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울산(22.1%)과 경남(29.4%)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 시기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던 광주(45.5%) 전남(43.2%),

전북(48.7%), 제주(50.5%), 강원(37.6%)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빠른 안정세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4월부터는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급격히 빠른 속도로 긴급보육 이용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확진자 수가 거의 한자리까지 떨어진 5월부터는 전남과 광주 지역은 90%에 이르는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였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7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또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각각 53.7%와 67.5%로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급보육 중심으로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상당부분 정상적 운영에 가까운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8월~9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8월 들어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5월 5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명을 기록하는 등 점차 안정세를 넘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 이후 휴가철과 일상적 경제활동 그리고 이태원 클럽 등의 사건 등을 계기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대략 20-30명 대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다른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빠른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울 일부 교회에서의 집회활동과 여름 휴가철 등의 이유로 8월 11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재차 50명대를 넘기게 되었고, 광화문 집회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8월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기는 등 월별, 일별 상황이 매우 급변하게 되었다. 이에 점차 정상화에 가까운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이던 어린이집은 8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 이용의 최소화를 권고함에 따라 9월 이후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의 경우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던 반면, 8월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추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8월 14일 전국에서 약 80%를 상회하는 이용률이, 8월 27일의 조사에서는 전국의 대부분의 수치가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1-3〉 참조). 특히 이번 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강원은 30%로 이하로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IV-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8월)

시도	14(금)	21(금)	24(월)	25(화)	26(수)	27(목)
전국	82.4%	68.7%	50.7%	50.0%	45.5%	42.7%
서울	78.0%	54.1%	46.7%	45.1%	40.2%	34.1%
부산	78.5%	46.2%	45.3%	47.0%	44.5%	44.0%
대구	86.8%	88.9%	63.5%	63.6%	63.7%	63.5%
인천	82.6%	67.3%	47.3%	44.9%	40.6%	31.1%
광주	83.6%	83.2%	48.7%	49.9%	47.4%	44.2%
대전	85.0%	85.9%	53.7%	54.1%	53.5%	52.4%
울산	84.0%	86.8%	33.8%	34.9%	33.1%	32.6%
세종	79.4%	71.0%	37.2%	37.4%	35.2%	34.2%
경기	80.5%	60.1%	50.1%	49.1%	45.4%	39.6%
강원	84.1%	69.7%	36.2%	34.5%	31.7%	29.6%
충북	84.9%	83.7%	35.2%	35.4%	34.8%	33.8%
충남	84.8%	86.1%	49.0%	49.0%	47.4%	42.9%
전북	86.2%	80.3%	66.5%	66.9%	64.3%	61.3%
전남	86.5%	77.7%	59.1%	56.8%	38.0%	45.3%
경북	85.3%	83.5%	77.3%	78.2%	77.3%	76.9%
경남	88.5%	84.1%	47.7%	45.8%	42.9%	42.1%
제주	88.7%	80.3%	82.1%	78.6%	27.3%	73.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한편,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 지역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9월 4일에는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교사 또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도록 안내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보육기반과-5494).

9월 11일(금)을 기준으로 아동 1,237천명 중 623천명이 등원하였으며, 등원율은 50.4%를 나타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IV-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긴급보육 이용률(9월)

시도	휴원여부	8.28.(금)	9.4.(금)	9.9.(수)	9.10.(목)	9.11.(금)
전국		43.4%	39.0%	49.9%	50.6%	50.4%
서울	○	35.2%	25.7%	34.5%	35.1%	34.9%
부산	○	44.3%	35.4%	52.5%	54.6%	54.2%
대구	△	63.5%	64.0%	76.9%	78.8%	79.3%
인천	○	35.1%	29.1%	39.8%	40.3%	40.3%
광주	○	32.6%	35.9%	45.1%	46.3%	47.1%
대전	○	52.6%	56.0%	69.0%	68.2%	67.2%
울산	○	33.1%	33.5%	39.1%	36.9%	36.8%
세종	○	34.2%	40.0%	53.2%	53.5%	52.8%
경기	○	41.1%	30.1%	39.8%	40.3%	40.1%
강원	○	30.1%	37.7%	50.9%	52.3%	52.3%
충북	○	33.4%	34.2%	45.1%	45.8%	45.3%
충남	○	44.1%	47.8%	59.9%	59.1%	58.1%
전북	△	61.5%	69.4%	80.8%	81.9%	81.2%
전남	○	43.9%	36.2%	51.1%	54.3%	53.8%
경북	△	77.6%	82.5%	89.0%	90.0%	88.5%
경남	△	42.8%	46.5%	59.7%	61.6%	61.6%
제주	△	73.7%	70.7%	86.4%	87.3%	86.1%

주: ○ 전체 휴원, △ 부분 휴원, × 개원 유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라.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수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5〉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20년 1월-7월)

(단위: 개소)

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월	4,406	1,342	708	12,541	17,092	159	1,152	37,400
2월	4,460	1,343	710	12,553	17,078	159	1,172	37,475
3월	4,547	1,327	682	12,071	16,153	154	1,175	36,109
4월	4,575	1,324	680	11,953	15,942	151	1,181	35,806
5월	4,598	1,325	677	11,872	15,867	150	1,182	35,671
6월	4,641	1,326	677	11,810	15,816	151	1,183	35,604
7월	4,699	1,322	677	11,746	15,775	151	1,186	35,55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임.

위의 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인 1월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견된 2월의 어린이집 개소 수는 37,400개소(1월)에서 37,475개소(2월)로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7월까지의 지속적인 전국 어린이집의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월과 3월 사이에 어린이집의 감소 추세가 시작된 이후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월과 7월까지 약 6개월간 전국에서 1,919개소가 폐원함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해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된 바 있다.²²⁾

물론 어린이집 폐원의 사유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원내 경영악화 등의 경제적 문제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어린이집의 폐원률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개소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가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직후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본행동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7번의 개정 및 추가대응지침을 배포하였다.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은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것인데,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I)을 배포한 이후 현재 5-2판(2020. 8. 31)까지 배포한 상황이다(9월 13일 기준).

22) KBS NEWS(2020. 5. 21일자 기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10% 폐원---보육공백 우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51654>(2020. 8. 28. 인출); 일간경기(2020. 7. 8일자 기사), “민간·가정 어린이집 코로나19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18>(2020. 8. 28. 인출).

〈표 IV-2-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경과

연번 (ver.)	계기	주요내용
기본 행동 지침	1.27. 주의→경계 상황 후 1.28. 배포	△ 후베이성 방문자 등원·출근 중단, 그 외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등원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안내 △ 외부인 출입금지, 발열체크 △ 외부행사 자제
1판	2.3. 지침 구체화	△ 등원·출근 중단 대상 후베이성→중국 방문자로 확대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요령 안내
2판	2.23. 경계→심각 상황 후 2.24. 배포	△ 등원·출근 중단 대상에 신천지대구교회 방문자 추가 △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빈번 접촉 물품 매일 소독 원칙 명시
3판	2.27.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시 배포	△ 등원·출근 중단 대상에 국내 유행지역 방문자, 유증상자 추가 △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관련 사항 안내
4판	휴원 지속에 따라 3.19. 배포	△ 각종 활동, 급·간식 시 일정 거리 유지, 물품 교차 사용 금지 등 접촉 최소화 △ 보건용 마스크 사용 기준 안내 △ 주기적 환기 강조 △ 아동·교직원 건강상태 기록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제 점검 실시
추가 대응 지침	휴원 장기화에 따라 4.9. 배포	△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밀 집도 완화 △ 미등원 아동·보호자 대상 교재·교구 제공 권장, 온라인 콘텐츠 제 공, 연락 △ 급·간식, 낮잠 시 일정 거리 유지, 개별놀이 중심 운영 등 접촉 최소화 △ 영유아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도 △ 경증 유증상자도 등원·출근 제한 조치
5판	휴원 해제에 대비하여 5.28. 배포	△ 보호자 동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 등 요건 하 특별활동 제한적 허용(휴원지역에서는 금지) △ 교직원(아동·외부인 접촉 시), 아동(유아 집단 활동 시) 마스크 착 용 지침 구체화 △ 냉방기기 가동 시 2시간마다 환기 원칙 명시
5-1판	휴원 해제 후 방역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7.21. 배포	△ 내부순환 방식 공기청정기 가동 제한 △ 휴원지역 특별활동 허용 △ 유증상 확진자는 격리해제 2주 후 출근·등원 가능
5-2판	단계 격상 반영하여 8.21 배포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 일시폐쇄 기준 현실화 △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보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7. 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조치 상황 및 계획. 참고1.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은 크게 1) 목적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3) 지자체 협조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관련 서식과 일반국민행동요령과 같은 내용이 붙임으로 함께 배포되었다.

어린이집용 대응조치사항에는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사항, 휴원 관련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어린이집 방역 강화 조치²³⁾

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마지막으로 배포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5-1판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원 및 출입 시 관리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격리해제 되었으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격리 해제일 2주 후부터 출근이나 등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p.5).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해야 하며,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이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자인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출근 또는 등원이 가능하며, 동거인이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pp.5-6).

처음 배포되었던 등원 및 출입 시 관리 지침에는 중국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원 중단 또는 업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그 대상지역과 증상을 넓혀나갔으며, 최종적으로는 유증상자의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확정되었다.

23) 이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각종 공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IV-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1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Ⅰ판) 배포 (2020.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자료 공유 (2020.2.3.)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 (2020.2.2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2.27.)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 중국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보육교직원, 재원 아동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추가 절차 용 • <u>시군구 보건소 접촉자 관리 담당자는</u> 통보받은 접촉자가 집단시설(어린이집 등)에 소속된(직원 아동, 학생 등 구성원)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청 내 담당부서에 즉시 정보 제공 - 사유 : <u>접촉자가 소속된 집단시설 구성원 또는 이용자 등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 이용 제한, 일시 폐쇄, 휴원, 격리 등 신속한 조치 필요</u> 등	(추가) - <u>보육교직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한시적 업무배제, 해당 교직원은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u> - <u>재원 아동 대상 체온측정 및 관찰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 등을 통해 등원 자제 및 의뢰기관 내원 등 권고</u> - <u>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 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u>	- <u>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동거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u> - <u>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 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u> - <u>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u>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 추가조치〉 - <u>보육교직원 외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 금지</u> - <u>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u>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중단 또는 업무 배제 - <u>코로나 19 발생 국가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 (동거가족 포함) 2주간 등원 중단 또는 업무 배제</u> - <u>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느끼는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u> 〈어린이집 내 감염 예방 추가조치〉 - <u>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 금지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출입</u> - <u>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u>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표 IV-3-2〉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개정 경과 2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3.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2020.3.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호흡기 등 유증상자 (입소·출입 시 방역관리 강화)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 후 입소·출입 안내,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체크 (위생관리) 손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은 수시 소독 등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소독 지침 준수하여 매일 소독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 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행사차제) 집단 행사·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위험지역 방문자는 철저히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 원장은 긴급보육 실시 교사 등 등원 교사에게 매일 건강상태 및 위험지역 방문이력 또는 방문계획 등을 사전 체크하여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어린이집 자체소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위험지역 방문자 파악,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위생수칙 교육·홍보, 외부인 출입 여부, 비누·손소독제 비치 등 어린이집 대응 지침에 기재된 사항 점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호흡기 등 유증상자 (감염예방 철저)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방역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은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 소독 지침 준수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 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행사차제) 집단 행사·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원 및 출입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u>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 이상) 유증상자</u>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등원 후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철저)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 (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u>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u>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3.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2020.3.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접촉 자제) 아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급·간식 및 활동 시〉 (급·간식) <u>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u>, <u>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u>, <u>일렬 식사 권장</u> (활동 요령) <u>수면·배변지도, 생활습관 개선 중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u> <u>하고, 각종 활동(음악·체육) 시 물품 상호 교차사용 금지</u>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나.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p.4).

〈표 IV-3-3〉 어린이집 소독 요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2020.2.5.)	
-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하되,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아래 원칙 준수	
물품 및 장비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업무 종료 후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원칙	
1. 취약지역(화장실, 조리실, 하수구 등)을 집중관리 한다. 2.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교재교구, 장난감 등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는다. 3.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 4.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할 것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제 희석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할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제를 뿌린 후 최소 10분 이후에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낼 것 - 소독제에 사람의 피부나 눈이 과다 노출시 즉시 흐르는 물에 5분 동안 씻어 낼 것 -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다. 마스크 착용 지침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육시간 내 아동을 접촉하거나,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면 마스크와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p.3).

아동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유아의 경우 노래·윺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p.3).

4.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관련

가.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사유 및 기준

코로나19 대응 초기 일시폐쇄 및 휴원의 기준은 확진자인지 접촉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폐쇄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일시폐쇄(출입금지) 된다. 다만,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재양성자)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0b: p.8).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재양성자의 경우 추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가격리 권고 등의 관리방안 조치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²⁴⁾

어린이집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일시폐쇄하며,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일시폐쇄 한다(보건복지부, 2020b: p.8).

한편, 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확진 규모·범위·추이 등에 따라 휴원 실시가 가능한데, 휴원 시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p.8).

〈표 IV-4-1〉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1

구분	(간급)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2020.2.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배포. (2020.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사유 및 기준 변경 안내. (2020.2.12.)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①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일시폐쇄〉 재원아동 및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①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24) 연합뉴스(2020. 5. 18일자 기사), 정부 "재양성자·타인 감염시킬 위험 없어...2주 추가격리 않기로"(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068752530?input=1195m>(2020. 8. 28. 인출).

구분	(긴급)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2020.2.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배포. (2020.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사유 및 기준 변경 안내. (2020.2.12.)
	②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 〈휴원〉 ①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와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 ② 그 외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원〉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쇄 ②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하되,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해제 〈휴원〉 -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감염병 진행상황, 지자체 여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린이집에 한정하고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것은 신중을 가할 것 • 불가피하게 관내 전체 어린이집 휴원시에는 어린이집 소득 등 필요 조치에 소요되는 최소기간(2~3일)으로 휴원 기간을 정하여 보육공백 방지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표 IV-4-2〉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개정 경과 2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2.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재안내 (2020.3.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 안내 (2020.8.28.)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이거나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	〈일시폐쇄〉 확진자: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판정 또는 격리 해제시	〈일시폐쇄〉 확진자: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

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2.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재안내 (2020.3.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 안내 (2020.8.28.)
	〈휴원〉 -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원〉 - 2. 27(목)~3. 8(일) 10일간 전국 어린이집 휴원하며, 코로나 19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접촉자: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시	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 접촉자: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기까지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최종 등원 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나.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

처음 긴급보육이 실시될 때에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므로, 긴급보육 이용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보육시간 역시 평상시와 같은 7:30~19:30을 원칙으로 하였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보육기반과-1963). 그러나 점차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밀집도 완화를 위해 가정양육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하도록 권고하여 어린이집 내 밀집도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보육기반과-2538). 특히,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월 30일부터는 감염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여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긴급보육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요령, 보육기반과-5366).

한편, 긴급보육 조차와 관련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근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긴급보육 이용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 아이와 보호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원과 보호자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서류 요구는 지양할 것을 안내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이 자의적으로 단축보육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연령통합보육의 경우에도 통합반 인원의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량운행 여부, 횡수, 시간은 긴급보육 수요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가급적 도보·자가용으로 등·하원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 시 아동·운전자·동승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및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보육기반과-5577).

〈표 IV-4-3〉 긴급보육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 개정 경과

구분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및 안전관리 관련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2020.2.25.)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2020.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요령 (2020.8.25.)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2020.9.1.)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	〈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준수사항〉 ① 휴원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 사실 안내 ②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 ③ 연령통합보육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④ 긴급보육을 위한 당번교사는 필수 배치, 그 외 교사 출근 여부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관리자인 원장이 결정	〈방역 강화사항〉 - 밀집도 완화 •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고 -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시 독립 반으로 편성 • 급·간식 및 낮잠 시간에 아동 간 거리 확보 -코로나19 유입 차단 • 해외방문자 뿐만 아	〈긴급보육 이용 제한〉 - 어린이집 휴원시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로 제한 - 보육시간도 꼭 필요한 시간으로 단축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준수 원칙(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력 운영 가능) - 긴급보육 시에도 반별 보육을 기본으로 하되, 반별 등원 아동이 적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보육 인원이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이하

구분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및 안전관리 관련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2020.2.25.)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2020.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요령 (2020.8.25.)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2020.9.1.)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어린이집 자체 소독 철저 ②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③ 처음으로 입소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예비비로 지원한 방역 물품 신속 구매, 집행	나라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도 14일간 업무배제 • 코로나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 중단 - 보육시간 내외 코로나 19 방역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시설 소독·위생관리 철저 - 영유아 대상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도		인 경우에만 가능 - 긴급보육 기간에는 한 보육실 내 2개 이상 반 보육을 자제하고,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수를 최대한 축소 - 가급적 도보·자가용으로 등·하원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 시에는 아동·운전자·동승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및 운행 전·후 소독 철저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5. 어린이집 지원 사항

가.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초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중국 방문 아동이거나 중국을 방문한 가족의 아동의 경우 등원을 자제하게 할 목적으로,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인정을 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없이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보육사업기획과-343). 그러나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휴원 하게 되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부모가 아동을 등원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부모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러한 지침은 휴원이 해제되더라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보육사업기획과-2120).

〈표 IV-5-1〉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개정 경과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2020. 1. 28)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및 보육료 지원 기준 재안내(수정) (2020. 2. 19)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 3. 5)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2020.6.1.)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기간: 2020. 1. 28~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내 (p.338)에 따른 '출석 일수별 보육료 지원 기준'(구간 결제) 미적용 대상: 중국(특히 우한 지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료 지침 기준 완화 기간: 2020. 1. 28~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u>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는 경우</u>	휴원에 따른 긴급 보육 실시, 가정 양육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별도 부모 보육료 발생되지 않음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되더라도 별도 공지시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출석을 신고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아동이 해외 체류중이라도 인정되나, 해외 출국 후 91일 되는 날부터는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로 지원 불가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나.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담임교사지원비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등이 ①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② 평일 4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이 휴원 한 경우, ②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등 지급 기준 안내, 보육사업기획과-347). 이러한 기준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

원비 지원 시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 휴원 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보육사업기획과-2120).

〈표 IV-5-2〉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관련 개정 경과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등 지급 기준 안내(2020.1.28.)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2020.2.26.)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2120(2020.6.1.)
교직원 수당지급 기준	기간: 2020. 1. 28~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 장 지원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 련 업무 배제 등 해당 보 육교직원 〈변경안〉 현행 근무일수 관련 지원 기준 에 못 미칠 경우,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업무 배제를 권고 받은 경우 ③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 체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수당) 휴원기간을 근무 일수로 포함하여 수당 지원 * 담임교사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 무일 수로 포함하여 지원(별도 공지 시까지) *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 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 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 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 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 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 견 취소된 경우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다.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현행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p.448),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사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는데, 처음에는 보육교사의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치 시까지 지원하고, 보육교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방문자인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지원하도록 하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보육정책과-714). 이후 확진자와 업무배제자, 그 외 업무배제자로 구분하여 지원 일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센터 출근 후 업무를 부여하거나 교육실시, 자택 내 유선 대기 등 각 센터 상황에 맞게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안내, 보육정책과-1372).

〈표 IV-5-3〉 대체교사 지원기준 관련 개정 경과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2020.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안내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2.27.)
대체교사 지원 기준	기간: 2020. 1. 29~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p.448,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 (변경) 감염증 완치 시까지 또는 최대 14일 지원인력: 육아종,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기준 특례〉 기간: 별도 지침시까지 내용: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p.448,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 - 확진자: 코로나-19 치료 및 완치시까지 - 업무배제자(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대상): 업무 배제 종료시까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기준 특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2020.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안내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2.27.)
			- <u>그 외 업무배제자(어린이집 자체 판단 대상):</u> <u>개인연차, 병가 활용</u> <u>시 최대 14일까지</u> 지원인력: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인력 운영 관련 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파견 어려운 경우 센터 출근 - 상기 사유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 가능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특례〉 - 확진자는 치료 및 완치시, 업무배제자는 업무배제 종료시, 그 외 어린이집 자체 판단 업무배제 대상은 최대 14일까지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라.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및 휴원 시 유급휴가 기준 마련

현행은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 현원기준²⁵⁾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의 현원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모두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보육사업기획과-460).

한편, 휴원 시에도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무급·연차사용 강요, 임금페이백 등이 문제되자,²⁶⁾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별칙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과,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보조(영아반, 누리반)교사,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다(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보육정책과-2012).

한편,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긴급보육 시 교사 근무는 순번제, 당번교사 배치 등을 통해 일일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였는데, 순번제, 찬력근무 등에 따른 미출근 시에도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교사 개인연차 잔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보육기반과-5577).

25)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60, 2020. 2.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붙임 파일 참조.

○ (원장) ①(국공립·법인 등)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1인 이상인 경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이 11인 이상인 경우

②(장애아전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③(영아전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 (보육교사) 반별 정원의 50% 이상 아동 재원 시 해당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26) 베이비뉴스(2020. 3. 17일자 기사), "인건비 나오는데 보육교사 무급 강요? 있을 수 없는 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87>(2020. 8. 25. 인출); 프레시안(2020. 3. 17일자 기사),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일부가 코로나19로 돈벌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3708?no=2837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2020. 8. 25. 인출).

〈표 IV-5-4〉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2020.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II판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재안내 (2020.3.2.)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2020.3.17.)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2020.6.1.)
인건비 지원 기준 등	기간: '20. 2. 3~ 별도 지침 시달시 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 내에 따른 '보육교 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안) -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 련 사유로 어린 이집 현원이 일 시적으로 감소 한 경우 인건비 지원의 현원기 준 적용 유예 -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 련 어린이집 일 시폐쇄 및 휴원 기준에 따라 어 린이집이 일시 적 폐쇄 또는 휴 원할 경우, 해당 기간 보육교직 원은 유급휴가 처리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 로 감소한 경우 인 건비 지원 현원기 준 적용 유예 및 어 린이집 일시 폐쇄· 휴원 시 유급휴가 처리	- <u>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유행에 따른 어린이집 휴 원기간 동안 인건 비를 정상지급</u> - <u>입소이동 감소의 경 우에도 현원기준 을 유예하여 인건 비 지급이 가능함</u>	〈휴원 관련 보육교직 원 급여 및 복무사항〉 - 영유아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 지원 출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 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 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임금 의 정상 지급 필요	- 인건비 지원 현원 기준의 적용 유예 (별도 공지 시까지)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마. 운영비 지원 관련

코로나19 장기화 및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 보육사업기획과-1627).

우선, 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아동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를 지급하며, 이를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3월 수준 보조금 유지를 통해 코로나 영향을 일부 보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0-2세반 아동 퇴소 시 수입 감소분의 평균 42.3% 정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누리운영비의 경우 3월 누리운영비 총 지원금과 해당 월 누리운영비 지원금 차액을 지원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3-5세반 아동 퇴소 시 수입 감소분의 약 25%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지원금은 4월분 기관보육료·누리운영비 입금 시점(5월 중순)에 최초 지원되었으며, 전국 휴원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교사 임금 지급 위반, 교사 고용유지 하지 않은 어린이집, 지급일 현재 폐원 또는 당월 폐원 예정, 휴지 중인 어린이집, 교사 임금페이백 위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집행 지침 통보, 보육사업기획과-1647).

〈표 IV-5-5〉 운영비 지급 기준 관련 개정 경과

구분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 (2020.4.11)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집행 지침 통보 (2020.4.13)
인건비 지원 기준 등	- 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아동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를 지급,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3월 수준 보조금 유지를 통해 코로나 영향을 일부 보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	〈코로나19 기관보육료 추가지원〉 - 3월 대비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아동 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지급, 인건비로 집행 - 4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관보육료 지급 월인 5월에 최초 지급

구분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 (2020.4.11)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집행 지침 통보 (2020.4.13)
	- 기관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아동 퇴소 시 수입 감소분의 평균 42.3% 보전 가능 - 전체 어린이집의 3-5세반 아동 퇴소 시 수입 감소분의 약 25% 보전 가능	→ 전국 휴원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까지 지원 - 4월 기관보육료 총 지원금과 해당 월 기관 보육료 지원금 차액 〈코로나19 누리운영비 추가지원 집행〉 - 누리운영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중 3월 대비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아동 수를 기준으로 누리운영비 지급. 인건비로 집행 - 4월 이용현황에 따른 누리운영비 지급 월인 4월에 최초 지급(4월말) → 전국 휴원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까지 지원 - 3월 누리운영비 총 지원금과 해당 월 누리 운영비 지원금 차액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6. 기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관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크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특례, 시간제보육 예약 취소 별점 부과 기준 완화, 시간제보육 운영 중단 및 재개 등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보육 이용 감소 등이 예상되어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현행 기준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 아동 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는데, 1월 28일부터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100% 지원하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된 뒤에는 시간제보육 예약 아동이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방문 가족(동일 거주)의 아동인 경우에는 예약 취소 시 무별점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

간제보육 예약 아동이 후베이성 입국자인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이용금지 및 자가격리를 권고하도록 하고, 그 외 중국 입국자인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이용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우려로 인한 시간제보육 이용 예약 취소 시 별점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약 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시간제 보육반은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과 동일하게 5월까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지자체별로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IV-6-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운영 관련 내용 개정 경과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안내 (2020.2.3.)	코로나19 관련 시간제보육 예약 취소 별점부과 기준 추가 완화 안내 (2020.2.2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실시 (2020.2.26.)	전국 단위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종료 안내 (2020.6.1.)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원 기준 등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기간: '20. 2. 3~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대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적용기간: 2020. 2.24.(월)~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변경) - 4일 전~3일 전까지 / - 2일 전~1일 전 까지/ - 예약 시간 전 : 별점 미부과 - 예약 시간 내 : -4점 - 미이용: -5점 - 초과이용: -7점	- 2.27(목)~3.8 (일)까지 전국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을 실시 - 시간제보육반 교사는 정상출근 원칙, 출근 여부 및 근무 시간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음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종료 안내〉 -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을 종료 지역 내 감염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 - 운영 재개하되, 지역 내 확진자 규모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기간 조정 가능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나. 어린이집 현장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를 계속적으로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표 IV-6-2〉 어린이집 현장평가 관련 개정 경과

구분	(긴급)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2020.2.3.)	한국보육진흥원-2020년 2월 현장평가 제외 대상 어린이집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어린이집 현장 평가 및 평가유효기간 관련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 2020년 2월 현장평가 진행 중단 및 연기 조치 시행 - <u>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의 2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제출 관계 없이 2월 현장평가 진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u> - 연기된 현장평가 기간 (3.30~4.29)에 평가 실시할 계획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기 후 추후 실시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과 한국보육진흥원 공문명이며, 보건복지부 공문번호는 참 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다.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가급적 자제 및 연기하고, 인터넷 교육, 동영상 강의 등을 적극 활용할 것과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자의 교육 참석 자제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을 배제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 밖에도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에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교육장 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여 제한하였다.

〈표 IV-6-3〉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개정 경과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 2.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 (202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 2. 27.)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집합교육 및 행사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가급적 자제 및 연기, 인터넷 교육, 동영상 강의 등 적극 활용 -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을 방문(14일 이내 입국)한 자의 경우 교육 참석 자제 요청 -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에 손세정제와 마스크, 체온계를 비치해 필요시 사용,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교육장 내 마스크 반드시 사용 - 교육 시작 전 예방수칙 동영상 상영 및 교육장에 포스터 게시 등 적극적 홍보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라.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나 지자체, 어린이집 자체 교육 등 다수가 모이는 집합교육은 연기하거나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역시 제한되었는데, 이에 새 학기(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은 교육신청 후에 우선 근무하도록 하고, 유예기간을 뒤 8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만 2년 내 보육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장기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을 명시하여 교육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보육정책과-837).

8월에는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보수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이수 기한을 '21년

2월까지 유예하였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보육정책과-5223).

〈표 IV-6-4〉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관련 개정 경과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 2. 2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2020.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배포 (2020. 2. 2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2020.8.24)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20.3 이후 어린이집 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 기미종사자는 유예기간 (~'20.8월) 내 교육이 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 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장기미종사자 교육 관 련 개정〉 개정(즉시 시행) - 다만, 장기 미종사자 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 년 이내의 기간 동 안, 보수교육을 이수 한 사람은 장기미종 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유예기간 (~'20.8월) 내 교육이 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 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20.8월말 현재까지 어린이집 근무 중이나 장기미종사 교육을 이 수하지 못한 경우 기 운영중인 보수교육 과 정(온라인특별직무교 육 과정 포함)을 통한 교육 이수시에도 인정 가능 '20.8월 현재 근무 중 인 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한을 '21.2월까지 유예

주: 상단 셀에 위치한 제목은 보건복지부 대응지침 및 공문명이며, 공문번호는 참고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마. 어린이집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관련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인건비는 정부지원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코
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되어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축소, 감원 등
이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해당 인력에 대해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
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처리기준
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다(어린이집 고용유지지
원금 제도 관련 안내, 보육정책과-3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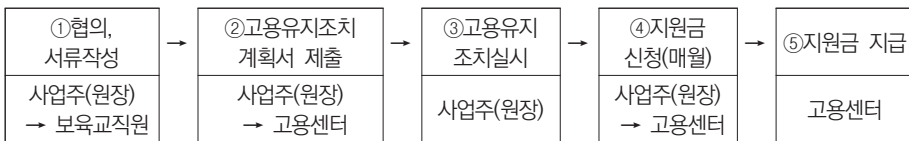
우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비율(영아반 80%, 유아반 30%) 만큼 공제하고 지원하며,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 보육교사 인건비(중소기업 120만원, 대기업 60만원)를 공제하고 지원하고,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한다.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77%를 공제하고 지원하며, 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판단을 위해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 표준회계관리시스템> 회계상세정보”에서 출력한 지방자치단체 “월별 총계정 원장”의 세입 관 항목 “01(보육료), 02(수익자부담수입), 03(보조금 및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15%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서류는 어린이집이 직접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IV-6-5〉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및 지급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3118, 2020. 5. 11).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안내. 붙임 2.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방법.

V

보육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01 코로나19 대응 평가

02 향후 과제

V. 보육 관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향후 과제

1. 코로나19 대응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을 겪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대유행한 경우는 없었기에 정부와 국민 모두 혼란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감염병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 바이러스의 진정세는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²⁷⁾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다양하고 빠르게 발생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²⁸⁾ 등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과 상황 속에서 당장에 코로나19에 의한 우리 사회와 보육환경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 또 언젠가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대처는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²⁹⁾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소위 ‘K-방역’으로 부르는 우리의 대처방식은 국제사회에서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금의 경험을 세밀히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후에 발생할 불상의 사태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질

27) 매일경제(2020. 7. 1일자 기사), IMF “2022년 이후까지 靑경제성장에 코로나19 손실 지속”,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674486/>(2020. 8. 30. 인출).

28) 중앙일보(2020. 8. 3일자 기사), WHO 암울한 전망 “코로나 특효약, 어쩌면 아예 없을수도”, 2020년 8월 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216>(2020. 8. 30. 인출).

29) 뉴스프리존(2020. 3. 1일자 기사), BBC,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90>(2020. 8. 30. 인출); 한겨레(2020. 8. 12일자 기사), 한국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3가지 비결,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57492.html(2020. 8. 30. 인출).

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제작하자마자 이를 어린이 집에 맞게 수정·추가하여 배포하고,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안내하여 보다 발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자료(표 IV-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월부터 5월 사이 어린이집 내 확진자 건수는 29건에 불과하며, 이는 당시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수이다. 또한, 원내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제, 서울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 내 원내 감염은 전혀 없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려 보낸 대응지침을 그대로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등원 때를 포함해 하루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고, 물품에 대한 수시 소독과 아이들 간 접촉 최소화,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을 잘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초기에 구성하여 안내하였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통해 아동 및 교직원의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을 총괄하게 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휴원명령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좁은 지역(사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발생하였을 때, 휴원명령과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영유아를 최대한 가정 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통한 무차별적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대응지침 개정과 공문발송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썼으며, 사실상 정상운영에 가까운 긴급보육 운영과 적극적인 가정 내 돌봄 지원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였다.

30) 동아일보(2020. 9. 9일자 기사),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수칙 잘 지킨 아이들 ‘추가 감염’ 막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9/102849858/1\(2020. 8. 30. 인출\)](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9/102849858/1(2020. 8. 30. 인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도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는 가정 내 돌봄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³¹⁾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과 경계심, 그로 인한 제한된 외부활동과 임의적 격리생활은 부모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매우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³²⁾ 또한, 직장 내에서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부모가 재택근무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감염병 상황 하에서의 명확한 근무지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³³⁾

감염병 유행 상황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긴급보육 이용률이 경우에 따라 80%가 넘는 등 원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어려웠고, 8월 강화된 조치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을 자제하게 하면서 기존에 긴급보육을 편하게 이용하던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커진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향후 과제

가. 영유아보육법상 휴원명령 및 일시폐쇄 기준 마련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43조의2 제1항). 다만, 이러한 휴원명령의 구체적 기준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 상태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실시하고 있는 일시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것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폐쇄 명령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예방조치가 발생하여 있을 동 명령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구체적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31) 중앙일보(2020. 3. 2일자 기사), 코로나로 맞벌이 육아 부담 가중.. 3쌍중 1쌍은 '부모님 찬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9970>(2020. 8. 30. 인출).

32) 매일경제(2020. 4. 26일자 기사), [코로나19 100일] 전대미문 '육아전쟁'... "아이 돌보는 상황도 재난", 2020년 4월 26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31288/>(2020. 8. 30. 인출).

33) 국민일보(2020. 3. 13일자 기사), 재택근무 중 눈치보여 출근하는 직장인,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27798>(2020. 8. 30. 인출).

즉, 현재 마련된 휴원명령 기준에 따라, 감염병 발생의 사유로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각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별로 확진 규모·범위·추이 등에 따라 휴원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반 조치사항으로서 긴급보육 제공,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 등원 중단·업무배제, 등원 및 출근 시 발열체크 등 건강점검, 외부인 출입 자제, 소독 실시 등의 내용을 법령에 정하여 어린이집 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폐쇄의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되, 재원아동 및 교직원이 감염병 확진자 내지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조치를 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수반조치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시간제 보육 정보 제공이나 가정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 할 것을 명시하여, 맞벌이 가정 등 당장에 돌봄 공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 긴급보육의 이용요건 및 기준 명확화

휴원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돌봄공백을 우려하여 긴급보육에 대한 이용요건을 두지 않고, 사실상 정상보육에 가깝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긴급보육 이용률이 80%를 상회하게 되었고, 일부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해 긴급보육 이용자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³⁴⁾

우리와의 근로조건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필수근로자만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러한 필수근로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한 융통성 있는 유연근무와 유급휴가의 사용, 장기휴가 및 재택근무를 하며 직접 자녀를 돌보도록 권하고 있다(정익중, 2020: p.49).

이러한 이유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휴원 시 최대한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입소우선순위를 참고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긴급보육은 사전에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어 보육이 꼭 필요한 아동만

34)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 보육교사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0>(2020. 8. 30. 인출). 해당 청원은 8월 30일 기준 6만3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내 밀집도를 줄이고, 교직원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린이집은 영아(재원 아동의 약 60%), 맞벌이 등 돌봄 필요성이 큰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반드시 맞벌이, 취약계층 등이 아니더라도 간병, 파트타임 근로, 임신, 병원 진료 등 돌봄이 어려운 각종 개인사정이 각기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 기타 사항

현재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핑크퐁 콘텐츠를 활용하여 손씻기 캠페인 영상을 만든 것처럼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예방수칙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영유아가 보다 쉽게 방역지침에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부모모니터링단(제25조의2),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제25조의3) 등이 규정되어 있고, 보육사업 안내에는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이 안내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p.141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개최하거나, 대면개최가 필요한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4월로 연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나(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보육기반과-1588), 부모모니터링단, 열린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대응지침상 명확한 내용이 없어 이와 같은 제도들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혹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제도 운영이 가능한 경우 등이 지침을 통해 정해져야 보호자와 기관 간의 갈등도 줄이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시에도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일부 지급받거나, 차량비를 내도록 하여 이에 대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³⁵⁾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 현장에서의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MBC뉴스(2020. 3. 17일자 뉴스). 5주 쉬면...어린이집·유치원비 환불 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3339_32524.html(2020. 8. 28. 인출); 대전일보(2020. 3. 5일자 기사). 코로나19 확산에 어린이집·유치원비 납부 놓고 혼란,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2587(2020. 8. 28. 인출) 참조.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0b).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1판.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 13, pp.47-59.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40, 2020. 1. 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69, 2020. 1. 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343, 2020. 1. 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347, 2020. 1. 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등 지급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714, 2020. 1. 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양사고수습본부-93, 2020. 2.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자료 공유.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719, 2020. 2. 3.). (긴급)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751, 2020. 2.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I 판) 배포.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42, 2020. 2.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43, 2020. 2.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60, 2020. 2.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837, 2020. 2.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815, 2020. 2.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028, 2020. 2. 1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사유 및 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103, 2020. 2. 14.).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 폐쇄·휴원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234, 2020. 2. 19.).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696, 2020. 2. 19.).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및 보육료 지원 기준 재안내(수정).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287, 2020. 2. 2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298, 2020. 2. 23.).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 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320, 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판 배포.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1372, 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773, 2020. 2. 25.). 코로나19 관련 시간제보육 예약 취소 별점부과 기준 추가 완화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330, 2020. 2. 25.).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및 안전관리 관련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803, 2020. 2. 2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실시.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827, 2020. 2. 26.).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440, 2020. 2.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III판) 배포.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371, 2020. 2. 2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529, 2020. 2. 28). 연장보육교사 복무 및 임면 관리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886, 2020. 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재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540, 2020. 3. 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 폐쇄 기준 재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588, 2020. 3. 3).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개최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614, 2020. 3.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640, 2020. 3. 5.).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3월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적용 알림.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691, 2020. 3. 6.).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 시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698, 2020. 3. 8.).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1963, 2020. 3. 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2012, 2020. 3. 17.).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2154, 2020. 3. 24.).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2267, 2020. 3. 3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2353, 2020. 4. 2.). 코로나19 관련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적용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2538, 2020. 4. 9.).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1627, 2020. 4. 11.).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1647, 2020. 4. 13.).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집행 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3118, 2020. 5. 11.).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3509, 2020. 5. 29.).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2120, 2020. 6. 1.).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2122, 2020. 6. 1.). 전국 단위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종료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3618, 2020. 6. 4.).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요건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3636, 2020. 6. 4.).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야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250, 2020. 8. 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등.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5223, 2020. 8. 2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366, 2020. 8. 2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요령.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491, 2020. 8. 28.).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494, 2020. 8. 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공문(보육기반과-5577, 2020. 9. 1.).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7. 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조치 상황 및 계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자 발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3. 17).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9).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0). 아기상어와 함께 손 씻기 노래 불러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27). 김강립 차관, 어린이집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격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 원제한 등 조치.
- 여성가족부 공문(가족문화과-261, 2020. 1.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공문. 2020년 2월 현장평가 제외 대상 어린이집 관련 안내.

【인터넷 자료】

- 감염병 뉴스레터, 코로나 19 국내발생 6개월 동안의 유행곡선과 대응조치,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825&s_keyword=&s_where=&start=10&target_self=yes(2020. 8. 17.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민일보(2020. 3. 13일자 기사), 재택근무 중 눈치보여 출근하는 직장인,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27798>(2020. 8. 30.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2020. 8. 25. 인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 보육교사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0>(2020. 8. 30. 인출).

법제처 포스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50430&memberNo=5011620&vType=VERTICAL>(2020. 8. 27.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2020. 8. 30.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page=2(2020. 8. 30. 인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do?id=ATC0000000000805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div_cd=&st=title&stext=\(8. 20 인출\).](http://www.0404.go.kr/dev/newest_view.do?id=ATC0000000000805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div_cd=&st=title&stext=(8. 20 인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대한민국 방역체제,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2020. 8. 27 인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일별 브리핑 이슈 모아보기,

<http://ncov.mohw.go.kr/lastBannerList.do?brdId=3&brdGubun=38>(2020. 8. 20, 9. 4 인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한국정부 대응체계(2020년 2월 25일 기준),

<http://ncov.mohw.go.kr/baroView2.do>(2020. 8. 17 인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2020년 6월 12일 0시 이후).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2020. 8. 17 인출).

코로나19 긴급조치 ⑥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모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69\(2020. 8. 27. 인출\).](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69(2020. 8. 27. 인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75\(2020. 8. 28. 인출\).](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75(2020. 8. 28. 인출).)

【기사】

뉴스프리존(2020. 3. 1일자 기사), BBC,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90\(2020. 8. 30. 인출\).](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90(2020. 8. 30. 인출).)

대전일보(2020. 3. 5일자 기사), 코로나19 확산에 어린이집·유치원비 납부 놓고 혼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2587\(2020. 8. 28. 인출\).](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2587(2020. 8. 28. 인출).)

동아일보(2020. 9. 9일자 기사),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수칙 잘 지킨 아이들 ‘추가 감염’ 막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9/102849858/1\(2020. 8. 30. 인출\).](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9/102849858/1(2020. 8. 30. 인출).)

머니S(2020. 9. 2일자 기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580만명·사망자 87만명,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0208198098353\(2020. 9. 15. 인출\).](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0208198098353(2020. 9. 15. 인출).)

매일경제(2020. 4. 26일자 기사), [코로나19 100일] 전대미문 ‘육아전쟁’... “아이 돌보는 상황도 재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31288/\(2020. 8. 30. 인출\).](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31288/(2020. 8. 30. 인출).)

매일경제(2020. 7. 1일자 기사), IMF “2022년 이후까지 2%성장률에 코로나19 손실 지속”,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674486/\(2020. 8. 30. 인출\).](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674486/(2020. 8. 30. 인출).)

베이비뉴스(2020. 3. 17일자 기사), "인건비 나오는데 보육교사 무급 강요? 있을

수 없는 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87>

(2020. 8. 25. 인출).

연합뉴스(2020. 5. 18일자 기사), 정부 "재양성자, 타인 감염시킬 위험 없어...2주 추가격리 않기로"(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068752530?input=1195m>

(2020. 8. 28. 인출).

연합뉴스(2020년 8월 30일자 기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https://www.yna.co.kr/view/GYH20200830001600044>(2020. 8. 30. 인출).

의협신문(2020. 2. 12일자 기사), 政,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명명,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04>

(2020. 8. 25. 인출).

일간경기(2020. 7. 8일자 기사), "민간·가정 어린이집 코로나19 특단의 대책마련 사급",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18>

(20. 8. 28. 인출).

조선일보(2020. 2. 29일자 기사), 전 세계 '우한 코로나' 확진자 8만명 돌파... 52 개국 피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9/2020022901525.html

(2020. 8. 25. 인출).

중앙일보(2020. 3. 2일자 기사), 코로나로 맞벌이 육아 부담 가중.. 3쌍중 1쌍은 '부모님 찬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9970>

(2020. 8. 30. 인출).

중앙일보(2020. 8. 3일자 기사), WHO 암울한 전망 "코로나特效약, 어쩌면 아예 없을수도", 2020년 8월 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216>(2020. 8. 30. 인출).

프레시안(2020. 3. 17일자 기사),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일부가 코로나19로 돈벌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3708?no=2837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0. 8. 25. 인출).

한겨레(2020. 8. 12일자 기사), 한국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3가지 비결,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57492.html

(2020. 8. 30. 인출).

- 한국경제(2020. 8. 31일자 기사), 인도네시아서 전염력 10배 강한 코로나 변종 발견,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3135527>(2020. 8. 31. 인출).
- BBC NEWS|코리아(2020. 2. 11일자 뉴스), 신종코로나: 어린이들은 왜 신종코로나에 잘 감염되지 않았을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454070>(2020. 8. 31. 인출)
- KBS NEWS(2020. 5. 21일자 기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10% 폐원---보육공백 우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51654>(2020. 8. 28. 인출).
- KBS뉴스(2020. 8. 16일자 뉴스), 수도권 등교 인원 1/3 제한...대학도 '비대면 수업' 권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8253&ref=A>(2020. 8. 28. 인출).
- MBC뉴스(2020. 3. 17일자 뉴스), 5주 쉬면...어린이집·유치원비 환불 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3339_32524.html(2020. 8. 28. 인출).

부록 1.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공문 내용 개정 경과³⁶⁾

가.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구분	(긴급)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 (2020.2.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I 판 (2020.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사유 및 기준 변경 안내. (2020.2.12.)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①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u>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u> ②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u>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u> <휴원> ①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와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u>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u> ② 그 외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u>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일시폐쇄> 재원아동 및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휴원>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폐쇄> ①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u>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u> ②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u>일시폐쇄하되,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해제</u> <휴원> -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u>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이 경우 감염병 진행상황, 지자체 여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린이집에 한정하고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것은 신중을 가할 것 • 불가피하게 관내 전체 어린이집 휴원시에는 어린이집 소독 등 필요 조치에 소요되는 <u>최소기간(2-3)으로 휴원 기간을 정하여 보육공백 방지</u>

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관련 공문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표로 정리함.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 판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III 판 (2020.2.27.)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재안내 (2020.3.2.)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 안내 (2020.8.28.)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휴원〉 -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u>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이거나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출입 금지) 조치 〈휴원〉 - 2. 27~3.8(일) 10일간 전국 어린이집 휴원하며, <u>코로나 19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u>	〈일시폐쇄〉 확진자: <u>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판정 또는 격리해제시</u> 접촉자: <u>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시</u>	〈일시폐쇄〉 확진자: <u>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 간</u>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u>확진도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u> 접촉자: <u>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u> * <u>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u> * <u>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u>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2020.5.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휴원> - 기존 3월 22일(일) 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 까지로 2주 연장	<휴원> - 4월 5일(일) 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함 •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부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 보호 이송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	<휴원> -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휴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은 휴원을 연장할 것을 권고함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 - (확진자 발생시) 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휴원> -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 • 휴원 시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자제,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나.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에 따른 조치사항

구분	(간접)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 (2020.2.3.)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2020.2.19.)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2020.2.2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2020.2.28.)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시 조치 사항	- 시군구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집에 일시폐쇄 또는 휴원을 명령하고, 기간·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림 - 휴원의 경우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 수립하여 운영 - 해당 어린이집 소독 실시 -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일시폐쇄 및 휴원 조치시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소와의 유기적 협조 통해 접촉자 여부 상시 파악하여 즉시 조치	〈일시폐쇄〉 -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호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소독업체 또는 방역 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휴원〉 -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기 시달(보육기반과 -815, '20.2.5.)한 소독지침에 따라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실시 〈일시폐쇄 및 휴원〉 -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호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휴원〉 -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파(매일 1회)	〈휴원〉 - 긴급보육 실시 - 교사는 정상출근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2020.3.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 (2020.8.31.)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시 조치 사항	〈휴원〉 -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실시해야함 - <u>인건비는 정상 지원하며, 입소아동 감소의 경우에도 현원 기준을 유예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u>	〈휴원〉 -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긴급보육 실시, 가정통신문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휴원〉 -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긴급보육 실시, 가정통신문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재개원 전 조치사항〉 -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 재점검 ①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사항 재확인 ②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③등원 예정 아동 건강 상태 유·무선 확인 ④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 SNS등을 통해 사전안내 ⑤장기간 미이용 시설(놀이터 등)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 철저

다. 긴급보육 시 준수사항

구분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및 안전관리 관련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 (2020.2.25.)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2020.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요령 (2020.8.25.)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안내(2020.9.1.)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	〈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준수사항〉 ① 휴원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 사실 안내 ②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 ③ 연립통합보육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④ 긴급보육을 위한 당번 교사는 필수 배치, 그 외 교사 출근 여부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관리자인 원장이 결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어린이집 자체 소독 철저 ②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③ 처음으로 입소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예비비로 자원한 방역물품 신속 구매, 집행	〈방역 강화사항〉 - 밀집도 완화 •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고 -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시 독립 반으로 편성 • 급·간식 및 낮잠 시간에 아동 간 거리 확보 - 코로나19 유입 차단 • 해외방문자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도 14일간 업무배제 • 코로나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 중단 - 보육시간 내외 코로나19방역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시설 소독·위생관리 철저 - 영유아 대상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도	〈긴급보육 이용 제한〉 - 어린이집 휴원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로 제한 - 보육시간도 꼭 필요한 시간으로 단축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준수사항〉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준수 원칙(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력 운영 가능) - 긴급보육 시에도 반별 보육을 기본으로 하되, 반별 등원 아동이 적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보육 인원이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긴급보육 기간에는 한 보육실 내 2개 이상 반 보육을 자제하고,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수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람 - 가급적 도보·자가용으로 등·하원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 시에는 아동·운전자·동승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및 운행 전·후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 판 (2020.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자료 공유 (2020. 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 판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III 판 (2020.2.27.)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 중국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보육교직원, 재원 아동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추가 절차 용 • <u>시군구 보건소 접촉자 관리 담당자는</u> 통보 받은 접촉자가 집단 시설(어린이집 등)에 <u>소속된(직원, 아동, 학생 등 구성원)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청 내 담당 부서에 즉시 정보 제공</u> - 사유 : <u>접촉자가 소속된 집단 시설 구성원 또는 이용자 등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 이용 제한, 일시 폐쇄, 휴원, 격리 등 신속한 조치 필요 등</u>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동거 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추가조치〉 - <u>보육교직원 외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 금지</u> - <u>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u>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중단 또는 업무 배제 - <u>코로나 19 발생국가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 (동거가족 포함) 2주간 등원 중단 또는 업무 배제</u> - <u>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느끼는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u>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추가조치〉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출입 -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3.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2020.3.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호흡기 등 유증상자 (입소·출입 시 방역관리 강화)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 후 입소·출입 안내,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체크 (위생관리) 손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은 수시 소독 등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소독 지침 준수하여 매일 소독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행사자제) 집단 행사·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위험지역 방문자는 철저히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 원장은 긴급보육 실시 교사 등 등원 교사에게 매일 건강상태 및 위험지역 방문이력 또는 방문계획 등을 사전 체크하여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어린이집 자체소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위험지역 방문자 파악,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위생수칙 교육·홍보, 외부인 출입 여부, 비누·손소독제 비치 등 어린이집 대응 지침에 기재된 사항 점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호흡기 등 유증상자 (감염예방 철저)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방역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은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 소독 지침 준수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행사자제) 집단 행사·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원 및 출입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u>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 이상) 유증상자</u>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기 안내한 방역조치 후 제한적 출입 <등원 후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철저) 보육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u>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u>

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3.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유증상자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관리 철저 (2020.3.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 (2020.3.1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2020.3.31.)
				(접촉 자제) 이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급·간식 및 활동 시〉 (급·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u>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일렬 식사 권장</u> (활동 요령) <u>수면·배변지도, 생활 습관 개선 중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u> 하고, <u>각종 활동(음악·체육) 시 물품 상호 교환 사용 금지</u>

마. 어린이집 대응요령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안내(2020.1.28.)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2020.2.21.)
어린이집 대응요령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 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판단)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인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됨(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등원 자제) 최근 중국(특히 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요청, 미 등원시에도 출석인정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 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판단)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인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됨(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	〈추가 대응사항〉 - 보육교직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한시적 업무배제, 해당 교직원은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재원 아동 대상 체온 측정 및 관찰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 등을 통해 등원 자제 및 의료기관 내원 등 권고 -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안내(2020.1.28.)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2020.2.21.)
		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고려(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2020.8.31)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 •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준수, 개인물품 사용,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아동)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다만, 유아의 경우 노래·윺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경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세척제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위한 필수물품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에 주의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어린이집 방역(소독)관리 • (기본)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 접촉의 최소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보육활동) 보육활동 시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 간 접촉 최소화 강구 (특별활동)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2020.8.31)
	진행 시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급·간식 시)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 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일렬 식사 권장 (집단 행사·교육 시)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자제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음성확인서 제출시까지 등원·출근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 중단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 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여 출입토록 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기록 관리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증상 확인한 경우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바. 어린이집 소독요령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 소독 요령 안내 (2020.2.5.)

-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하되,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아래 원칙 준수

물품 및 장비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업무 종료 후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원칙

- 취약지역(화장실, 조리실, 하수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교재교구, 장난감 등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할 것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제 희석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할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제를 뿌린 후 최소 10분 이후에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낼 것
 - 소독제에 사람의 피부나 눈이 과다 노출시 즉시 흐르는 물에 5분 동안 씻어 낼 것
 -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사. 긴급보육 관련 방역 강화사항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추가 대응지침 안내 (2020.4.9.)

〈방역 강화사항〉

- 밀집도 완화
 -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고
-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시 독립 반으로 편성
 - 급·간식 및 낮잠 시간에 아동 간 거리 확보
- 코로나19 유입 차단
 - 해외방문자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도 14일간 업무배제
 - 코로나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 중단
- 보육시간 내외 코로나19방역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시설 소독·위생관리 철저
- 영유아 대상 자기주도적 위생수칙 지도

아.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2020. 1. 28)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및 보육료 지침 기준 재안내(수정) (2020. 2. 1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2020. 3. 5)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2020.6.1.)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기간: 2020. 1. 28~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내 (p.338)에 따른 '출석 일수별 보육료 지원 기준(구간 결제) 미적용 대상: 중국(특히 우한 지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보육료 지침 기준 완화 기간: 2020. 1. 28~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u>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는 경우</u>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가정 양육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별도 부모 보육료 발생되지 않음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 되더라도 별도 공지 시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출석을 신고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인정되나, <u>해외 출국 후 91일 되는 날부터는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로 지원 불가</u>

자. 보육교직원 수당지급 기준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담임교사지원비 등 지급 기준 안내(2020.1.28.)	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2020.2.26.)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2020.6.1.)
교직원 수당지급 기준	기간: 2020. 1. 28~ 별도 지 침 시달시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무 배제 등 해당 보육 교직원 〈변경안〉 근무일수 포함사유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 유로 휴원 ② 어린이집 업무 배제 권고 받은 경우 ③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대체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수당) 휴원기간을 근무일수 로 포함하여 수당 지원 *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 수로 포함하여 지원 (별도 공지 시까지) ①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 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 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 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 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 로 파견 취소된 경우

차. 대체교사 지원 기준

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안내 (2020. 1.2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안내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2020.2.27.)
대체교사 지원 기준	기간: 2020. 1. 29~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내용: 2020년도 보육 사업 안내(p.448,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 (변경) <u>감염증 완치 시까지 또는 최대 14일</u> 지원인력: 육아종,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u>완치 시까지</u>,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u>최대 14일간</u>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기준 특례〉 기간: 별도 지침시까지 내용: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p.448,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조정 - 확진자: <u>코로나-19치료 및 완치시까지</u> - <u>업무배제자(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대상): 업무배제 종료시까지</u> - <u>그 외 업무배제자(어린이집 자체 판단 대상): 개인 연차, 병가 활용 시 최대 14일까지</u> 지원인력: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인력 운영 관련 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파견 어려운 경우 센터 출근 - 상기 사유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전액 지급 가능	치료가 필요한 경우 <u>완치 시까지</u>,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u>최대 14일간</u>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기준 특례〉 - 치료가 필요한 경우 <u>완치 시까지</u>,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u>최대 14일간</u>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기준 추가 특례〉 - 확진자는 치료 및 완치, 업무배제자는 업무배제 종료 시, 그 외 어린이집 자체 판단 업무배제 대상은 <u>최대 14일까지</u>

카. 인건비 지원 기준 등

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2020.2.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II판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재안내 (2020.3.2.)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2020.3.17.)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 (2020.6.1.)
인건비 지원 기준 등	기간: '20. 2. 3~ 별도 지침 시 달시까지 내용: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보 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 -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 련 사유로 어린 이집 현원이 일 시적으로 감소 한 경우 인건비 지원의 현원기 준 적용 유예 -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 련 어린이집 일 시폐쇄 및 휴원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이 일 시적 폐쇄, 또 는 휴원할 경 우, 해당 기간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처리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 로 감소한 경우 인 건비 지원 현원기 준 적용 유예 및 어 린이집 일시 폐쇄· 휴원 시 유급휴가 처리	- <u>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에 따른 어린이 집 휴원기간 동안 인건비를 정상지급</u> - <u>입소아동 감소 의 경우에도 현 원기준을 유예 하여 인건비 지 급이 가능함</u>	〈휴원 관련 보육 교직원 급여 및 복무사항〉 - 영유아 출석일 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 을 유예하여 인 건비 지원, 출 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 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 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 금 삭감 강요, 개 인연차 사용 강 제 등은 「근로기 준법」의 벌칙 규 정에 따른 처분 가능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 원 인력에 대하 여는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 상 지급 필요	- 인건비 지원 현 원 기준의 적용 유예(별도 공지 시까지)

타. 보육료 지원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2020.2.27.)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3월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적용 알림 (2020.3.5.)	코로나19 관련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적용사항 안내 (2020.4.2.)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해제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등 재안내(2020.6.1.)
보육료 지원	- 대상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내용 • '14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진단서 제출 유예 가능 • '14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기준 준수 유지)	- 코로나19 유행으로 초등학교 개학이 3.23.로 연기됨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긴급돌봄 수요 증가 - 따라서 3.1~3.22의 기간을 방학기간에 준하여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지원단가를 적용하고자 함 *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코로나19 관련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적용사항〉 - 개학이전까지의 기간은 방학기간에 준하여 방학기간 방과후보육료 지원단가를 적용 *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 등교개학 이전 온라인 개학 기간 또한 방학기간과 같이 방과후보육료 지원 예정 - 방학 기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보육을 이용,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방과후보육 이용 시에는 학기중과 동일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50%	-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별도 공지 시까지) - 연장보육료: 실제 출석한 아동에 대하여 연장보육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

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기준 등

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2020.2.24.)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관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안내 (2020.2.3.)	코로나19관련 시간제보육 예약 취소 벌점부과 기준 추가 완화 안내 (2020.2.2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실시 (2020.2.26.)	전국 단위 시간제보육반 운영 중단 종료 안내(2020.6.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기준 등	이용실적에 관계 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기간: '20. 2. 3~ 별도 지침 시 달시까지 대상: 시간제보 육 제공기관 (변경안)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이용실적에 관 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적용기간: <u>2020.2.24. (월)~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u> (변경) - 4일 전~3일 전 까지/ - 2일 전 ~1일 전까지/ - 예약 시간 전: 벌점 미부과 - 예약 시간 내: -4점 - 미이용 : -5점 - 초과이용 : -7점	- 2.27(목)~3.8 (일)까지 전국 시 간제보육반 운 영 중단을 실시 - 시간제보육반 교사는 정상출 근 원칙, 출근 여 부 및 근무 시간 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음	<시간제보육반 운 영 중단 종료 안내> -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시 간제보육반 운 영 중단을 종료. 지역 내 감염수 준에 따라 자차 체별로 운영 재 개 여부를 결정 - 운영 재개하되, 지역 내 확진자 규모 및 추이 등 을 고려하여 지 자체장의 판단 에 따라 운영 기 간 조정 가능

하.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등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2020.2.24.)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요건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2020.6.4.)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등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20.6월) 연장 예정’	〈누리과정연수 이수 유예기간 수정〉 - 원격연수: ‘20년 7월까지 이수 - 집합연수: ①‘21년 2월까지 어린이집당 1명씩은 이수 ②‘21년 6월까지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 이수 〈교사(반)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 ∼’20.7. : 연수 이수 요건 없음 - ‘20.8∼’21.6 : 원격연수 이수한 교사(반) - ‘21.3∼’21.6 :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 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 - ‘21.7.∼ :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거.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관련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연장보육료·인건비 지급 조건 유예 안내(2. 17)

- 코로나 19 상황으로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가 지연되어 설치 시한을 연장함

(적용유예)

계약은 하였으나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전자출석부에 수동입력을 인정. 연장보육료 산정 및 지급

(인건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는 4월까지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와 관계없이 지원

(등·하원 관리 및 보육료 산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 구축 되어있는 전자출석부 활용하여 등·하원시간 어린이집에서 수동 등록

너. 연장반 보육교사 복무 관련

구분	연장보육교사 복무 및 임면 관리 안내 (2020. 2. 28.)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휴원 시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안내 (2020.3.6.)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안내 (2020.6.4.)
연장보육교 사 복무 등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연장보육교사 복무 관리 • 어린이집 업무 적응 등을 위 해 정상 출근하여 보육업무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조정가능(업무 및 근무시 간 등)	〈휴원시 야간연장보육교사 인 건비 지원기준 특례〉 - 단, 코로나19로 인한 어린 이집 휴원 및 일시폐쇄 기간 동안은 야간연장보육시간이 월20시간 미만이라도 지원 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예: 2월에 야간연장보육시간 이 월 20시간 미만이고 3월 휴원으로 20시간 이상을 채우 지 못한 경우에도 4월까지의 인건비 지급)	- (2020 보육사업안내) 야간 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의 총 합이 월 20시 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 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 여 지원 - (기존 휴원 기간 특례, 3.6)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및 일시폐쇄 기간 동안은 야간연장보육시간이 월20 시간 미만이라도 지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하 지 않음 - (금번 추가 안내사항) 별도 안 내 시까지 야간연장보육시간 이 월 20시간 미만이라도 지 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더. 어린이집 평가 관련

구분	(긴급)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및 현황 파악 요청 (2020.2.3.)	한국보육진흥원-2020년 2월 현장평가 제외 대상 어린이집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어린이집 현장 평가 및 평가유효 기간 관련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 2020년 2월 현장평가 진행 중 단 및 연기 조치 시행 - <u>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의 2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제출 관계 없이 2월 현 장평가 진행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u> - 연기된 현장평가 기간 (3.30~4.29)에 평가 실시할 계획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기 후 추후 실시		

러. 교육 관련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2020.2.24.)	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 (202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2020.2.27.)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집합교육 및 행사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가급적 자제 및 연기, 인터넷 교육, 동 영상 강의 등 적극 활용 -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을 방문(14일 이내 입국)한 자의 경우 교육 참석 자제 요청 -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에 손세 정제와 마스크, 체온계를 비치 해 필요시 사용,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교육장 내 마스크 반드시 사용 - 교육 시작 전 예방수칙 동영상 상영 및 교육장에 포스터 게시 등 적극적 홍보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2020.2.24.)	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2020. 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 (2020.2.27.)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 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유 예기간(~'20.8월) 내 교육이수 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 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장기미종사자 교육 관련 개정〉 개정(즉시 시행)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봄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 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유예기간(~'20.8월) 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보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2020.5.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2020.8.24.)
교사 교육과정 운영 안내관련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린이집 휴원 연장 등을 고려, 2급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2020년 1학기에 한하여 조정 운영 가능하도록 조정함 - 대면교과목(8개, 보육실습 제외) 운영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 현장 직접실습을 진행, 2주는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현장실습 대체가능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린이집 휴원 연장 등을 고려, 2급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2020년 1학기에 한하여 조정 운영 가능하도록 조정함 ①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운영 - (대체수단 인정 기간) '20.2학기 지속 적용,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면교과목)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 (동시적 원격수업·원격시험) 인정 및 코로나 확진자(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자)에 대한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보육실습) 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자체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교육관리) 교육기관은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②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교육) 과정 운영 - '20.8월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한을 '21.2월까지 유예 ③기타 교육과정 운영 참고사항 - 교육과정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 되도록 관리 철저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판(2020.2.27.)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체 및 연기 등)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유예기간(~'20.8월) 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머.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지원 관련

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통보 (2020.1.29.)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2020.2.1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II판 배포 (2020.2.24.)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참고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안전 강화〉 -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 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 입국 후 최소 14일간 서비스 이용 및 연계 자제 권고, 특히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가족 포함)인 경우 서비스 이용 및 연계 중지 - 아이돌보미 집담회, 집 단 행사 등 신규 개최 는 연기 등 자제 원칙 -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 〈지원 확대 방안〉 - 해당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휴 원·휴교 등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정부지원 허용 및 즉시 이용 가능		〈지원 개선〉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서비스 정부지원 : 휴원 또는 휴업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부지 원 절차(소득유형 미판 정시) : ① 이용요금 전액 지 불(계좌이체) ② 정부지원 신청(주민 센터)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자료 보완 시 정부 지원금 환급 → 즉시 이용가능	
조치 사항	- 이용가정과 아이돌보 미 간 일시연계 등으 로 연계 활성화 - 해당 시·군·구 아이돌 보미 부족 시 타 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적극 시행 - 중대사고 보고체계에 따라 의심 증상 발생 즉시 기관에 유선통보 후 관련 사항 별도 서 면 보고			

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통보 (2020.1.29.)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2020.2.1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Ⅱ판 배포 (2020.2.24.)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참고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가족돌 봄휴가 제도 및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어려워질 경 우 보육공백 최소화 를 위해 가족돌봄휴 가제도 및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제도 활 용할 수 있도록 안내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제도				- 가족돌봄휴가를 사 용한 근로자를 대상 으로 1인당 일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 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코 로나 상황 종료 시 까지 한정 지원)

버. 기타 사항

구분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0.3.3.)
운영위원회 개최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가능 - 다만 운영위원장 선출 등으로 인하여 대면개최가 필요한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3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4월로 연기 가능
구분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안내(2020.3.24.)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동의 기간 연장〉 - 코로나 19관련 휴원으로 인해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서면동의 받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신규 반영성 기간”을 코로나 19관련 휴원 후 재개원한 날로부터 1개월로 적용
구분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안내 (2020.5.11.)
고용유지 지원금	-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인건비 정부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 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 제외됨 - 국고 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대상이 됨 - 어린이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및 지급 절차 : ①협의, 서류작성→②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③고용유지조치 실시→④지원금 신청(매월)→⑤지원금 지급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2020.8.28.)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 (등원)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 제한 - (교사배치)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배치, 교대근무 등 실시 - (외부인 출입) 불가피·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 원칙, 원내 필수 장비 등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필요한 경우에도 보육 시간 외 실시 - (특별활동·외부활동·집단행사·집합교육) 실시 금지

부록 2. 정부의 코로나19 발생 단계별 이슈 정리³⁷⁾

가. 초기 발생(1. 20 ~ 2. 17)

2. 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7.  진단검사 가능 의료기관 및 보건소 현황
2. 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8.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시설 소독 안내 지침 배포
2. 10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0.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  입국자 건강 모니터링 자가진단앱
2. 11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1.  3차 이송 임시항공편 오늘밤 출발  여행·방문 최소화 권고 지역  중국 외 감염국가 여행 이력정보
2. 1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2.  3차 우한 교민 이송·격리 진행상황  행사·시험 등 집단행사 지침 마련  홍콩, 마카오 특별입국절차 적용

37) 해당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일별 브리핑 이슈 모아보기
 (<http://ncov.mohw.go.kr/lastBannerList.do?brdId=3&brdGubun=38>, 2020. 8. 20 인출)을 참조함

2. 1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3. ☑️ 우한 국민 147명 모두 음성, 안전 입소 ☑️ 자가진단앱 등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 중심 자가격리 관리 강화
2. 1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4. ☑️ 1·2차 우한 교민, 내일부터 퇴소 ☑️ 자가진단앱 미입력자 콜센터 통한 관리 ☑️ 입국제한 조치 후 중국발 입국자 감소
2. 1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5. ☑️ 오늘부터 이틀간 우한 귀국 국민 퇴소 ☑️ 2.17부터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 확진자 및 격리자 등 24시간 심리지원
2. 1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6. ☑️ 진단검사 기준 확대 등 지역사회 전파 대응 강화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 ☑️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완화
2. 1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7. ☑️ 원인불명 폐렴 등 진단검사 확대 계획 ☑️ 중국 입국 유학생 건강상태 모니터링 ☑️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 18 ~ 5. 5)

2. 1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8. ☑ 일본 크루즈선탑승 우리 국민 귀국 지원 ☑ 어르신 많은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2. 1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19. ☑ 지역사회 전파 차단 대응 총력 ☑ 건강보험 급여비 의료기관 조기지급 ☑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염 예방·방역 관리
2. 20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0. ☑ 코로나19 대구시 집단발생 대응 ☑ 지역사회 감염 대비 대응지침 개정 시행 ☑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감염차단 방안 논의
2. 21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1.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방역대책 강화 ☑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 감염예방 대책 ☑ 대구·경북 특별 방역 대책 및 치료 역량 확보
2. 2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2. ☑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 선별진료소 등 운영 위한 지자체 보건소 의료인력 파견

2. 2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3.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범부처 대응 강화 ☑️ 대구·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으로 집중관리
2. 2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4. ☑️ 전국적 확산대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범정부 역량 결집 ☑️ 대구·경북지역 적극적 방역조치 및 지원 ☑️ 학생 안전보호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2. 2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5. ☑️ 대구경북지역 병상확보, 의료인력 등 적극 지원 ☑️ 전국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전수 조사 실시 ☑️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방안 마련 ☑️ 안심진료 제공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
2. 2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6. ☑️ 집단행사 등 예방조치를 위한 지침 개정 ☑️ 병원내 감염차단 국민안심병원 91개 지정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2.27-3.8) ☑️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 매일 약 500만 개 마스크 공급 예정
2. 2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7. ☑️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 병원 내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한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2. 2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8. ☑ 대구·경북 의료진 감염 위험 방지 보호장비 신속 공급 ☑ 시도별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운동을 통한 의료 인력 적극 지원 ☑ 병원 내 감염 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174개 지정 (2.27)
2. 2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2.29. ☑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인력 지원 및 방역 조치 ☑ 신천지 국내 신도·교육생 조사 실시 중 ☑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모두 검체채취 완료 ☑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3. 1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1. ☑ 코로나19 대응 치료체계 개정(대응지침 7판) ☑ 신천지 교회 신도·교육생 증상유무 조사 약 94.9% 완료 ☑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 노력 강화
3. 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2. ☑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진 현황 ☑ 의료인 감염 차단을 위한 보호장구 등 물자 관리방안 ☑ 헌혈수급 악화에 따른 안전조치 추진 강화 ☑ 마스크 공급물량의 안정적 확보, 장·단기 생산 확대
3. 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3. ☑ 환자 급증 대구·경북 지역, 고강도 방역대책 지속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상황 점검 ☑ 대구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모집 안내 및 권고 ☑ 전국적인 환자 증가 대비, 환자치료 관리체계 재구축

3. 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4. 경북·대구 생활치료센터 3개소 운영 및 지속적 확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마스크 및 생활용품 민간 후원 연계 지원
3. 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5. 경산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3.22) 및 긴급보육지원 신규 공중보건 의사 조기 임용 및 배정
3. 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6.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추진 가용 음압병상 신속 파악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의료인 등 현장종사자 심리지원 강화
3. 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7.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현황 및 향후계획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경증환자 총1,110명 입소) 국민안심병원 의료기관 총 303개소 지정 (3.7.기준)
3. 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8.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총 1,180명 입소, 생활치료센터 첫 퇴소 36명 (3.8.부터) 코로나19 대응 시 적극행정 제도 활용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3.9.부터)

3. 1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15.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파견 의료인력 피로도 경감 및 교체방안 검토 ☑ 의료기관 건강보험, 예산, 손실보상 등 지원 확대
3. 2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22. ☑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전국민 동참 호소 ☑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 이행점검 ☑ 일반 사업장 대상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 마련 배포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원 방안 마련 예정
3. 2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3.29. ☑ 전 세계 모든 나라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실시 ☑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시설격리 이용·비용 지불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 적용
4. 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5. ☑ 의료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예방 추진방안' 마련·시행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정당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 '무관용 원칙' 엄정 처리]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5.)
4. 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6. ☑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4.19)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감염 확산 차단 효과 확인 사회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요청

4. 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7. ☑ 단계별 온라인 개학 실시 (4월 9일부터) ☑ 학원·교습소(학원 등) 휴원 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강화
4. 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8. ☑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 ☑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
4. 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9.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 손실보상금 약 1,020억 원 개산금 지급 예정 ☑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점검
4. 10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10.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 논의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4월 10일)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해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4. 1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4.12.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 적용 ☑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 실시 (4.13 0시 기준)

4. 1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4. 13.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종교활동 지원 추진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 강화 ☑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 점검
4. 1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4. 14. ☑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 마련 ☑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총 43명에 대한 검역 및 지원사항 발표
4. 1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4. 16. ☑ 일선 의료 현장 의료진의 사기·자부심 진작을 위한 의료진 홍보활동(캠페인) 추진(#덕분에 챌린지) ☑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4.16.)를 통한 향후 대응방향 논의

다. 생활방역전환기(사회적거리두기 1단계)(5. 6 ~ 8. 15)

6. 2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6. 24. ☑ 전자출입명부 사용 편의성 개선 ☑ 국내 입항 선박 항만방역 관리 강화 ☑ 하절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 ☑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	--

6. 2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6.26. ☑️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 관리 개선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 운영 ☑️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실시
6. 2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6.29. ☑️ 지역사회 발생 감소 해외유입 발생 증가 ☑️ 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총력대응 ☑️ 여름휴가·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7. 1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1. ☑️ 전자출입명부 고위험시설 의무적용 ☑️ 향만 방역관리 강화 ☑️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 관리 강화 및 세분화
7. 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3.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체계 정례화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7. 6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6. ☑️ 비수도권 지역 하루 평균 환자 수 증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서울시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 제작·배포 ☑️ 덕분에 챌린지 '국민 캠페인'화 전환

7. 8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8. ☑ 교회 내 대면 모임 자제 등 교회 방역 강화 ☑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 종합평가 ☑ 식사문화 개선 추진 사항 점검 ☑ 광주광역시 시민 이동량 감소
7. 10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10. ☑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인한 관리 강화 ☑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 휴관 중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7. 1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13. ☑ 대전·충청, 광주·전남 중심으로 감염 전파 ☑ 입국자 방역 관리, 향만 방역 관리 강화 ☑ 생활 방역 일자리 잡정 추산 7만 3,000개 ☑ 각 지자체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구성·운영
7. 1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15.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추가 지정, 교대선원 관리 강화 ☑ 광주·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감소 ☑ 고위험시설, 방역 취약시설 기획점검
7. 1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17. ☑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마련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정부 주도 이송 및 방역 관리 ☑ 본격적 피서철 맞아 고위험 시설 점검 철저

7. 20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20. ☑ 수도권과 호남권 환자 발생 계속 ☑ 해외유입 환자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 대상 국가, 기존 4개국 → 6개국 확대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지속 개선
7. 22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22. ☑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7.24. 18시~) ☑ 이라크 건설근로자 귀환 안전 수송 및 방역 관리 철저 ☑ 군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
7. 2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24.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검역, 의료지원 ☑ 하절기 선별진료소 시설 및 운영 개선 ☑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여름방학·휴가 대책 ☑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 강화
7. 2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27. ☑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 발생 ☑ 지자체별로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지침 제시 추가 ☑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7. 29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29. ☑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 지역사회 전파 1건도 없어...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 추가 귀국 (7.31~) ☑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출국 지연 대책

7. 31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7.31. ☑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 체류지 관리 강화 ☑ 격리·치료시설 설치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 관리 ☑ 코로나19 손실보상 개산금 지급 및 손실보상 시작
8. 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8. 3. ☑ 증가하는 해외유입 환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반드시 필요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코로나19 건강 생활수칙 마련 → 코로나19 및 복지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8. 5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8. 5. ☑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관리 상황 점검
8. 7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8. 7. ☑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 분리 '카페 방역지침' 시행 ☑ 코로나19 해외건설현장 지침 개정 방역물품 지원 ☑ 이라크 1차 귀국 건설근로자 임시생활시설 퇴소 ☑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대책 논의
8. 14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 8. 14.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 착수 ☑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국내 방역조치 위반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8.17.)

라. 수도권 및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³⁸⁾(8. 16 ~, 8. 23 ~)

8. 23	오늘의 브리핑 이슈 2020.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가능
-------	---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일별 브리핑 이슈 모아보기,
 (http://ncov.mohw.go.kr/lastBannerList.do?brdId=3&brdGubun=38, 2020년 9월 4일 인출).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 8. 18.)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20. 6. 25 시행) 및 을 질병관리본부 지침관리팀의 자문을
받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1판)을 수정·추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2020. 8. 3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2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5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7
5. 시설 휴원관련 사항	8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8
III. 지자체 협조사항	9
▷ 참 고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10
▷ 서 식 ◁	
1.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1
2.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2
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13
▷ 붙 임 ◁	
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20
6.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7.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23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25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20. 8. 18.)됨에 따라
 -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
- ☐ 그간의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접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기본방향

- ☐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 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
 - * (감염관리책임자 역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 총괄
 -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 원장은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지체없이 대응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
 -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을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준수,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 관련 홍보물*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붙임 1~5)
 -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 *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아동)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다만, 유아의 경우 노래·윺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질병관리본부)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편 참고(붙임2)

□ 환경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 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어린이집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 실시
 - *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은 제한하되, 미세먼지 나쁨 등 필요 시 필터 관리 및 환기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편 참고(붙임5)

□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 (기본)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서식3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
-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편 참고(붙임3)

소독대상 물품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매일 업무 종료 후
현관 보육실 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 접촉의 최소화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하되(참고1),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 (보육활동) 보육활동 시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강구
- (특별활동)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 * 반드시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등을 확인
-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 *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진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급·간식 시)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일렬 식사 권장
- (집단 행사·교육 시)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하되(참고1),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
 -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2)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 최소화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음성확인서 제출 시 까지 등원·출근을 중단할 것
- 다만,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되었으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집은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단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격리해제일부 2주후 출근 또는 등원 가능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입퇴원확인서, 퇴소확인서 등으로 기간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집(원장)에 연락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 단, 38도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자이며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출근 또는 등원 가능

- 또한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
- 위 경우 **보호자 및 교직원**이 구체적 내용을 어린이집에 통보토록 하여 어린이집 감염예방 신속 대응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 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여 출입토록 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발열검사 실시 기준 참고) 및 기록 관리 (서식1,2)
-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학생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로 교통 흐름 방해 유발 등을 양해하는 문구를 차량 뒤에 부착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 i)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ii)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 i)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ii)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 i)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 ii)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위 증상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 *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기침, 호흡기, 발열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귀가 조치), 다만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2)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4. 유증상자 발견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
-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수술용 또는 보건용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하여 대기하도록 함
 - *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 시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력, 확진환자 접촉력, 가족 내 유증상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연관성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
 -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 동행, 아동이 진료받도록 함 (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기관 내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
- 진료결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재원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12)
 -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등원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 단, 자택에 머물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 조치

5.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

□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
-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재양성자)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방역대책 본부 지침)
- (확진자 발생 시) 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 *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

□ 휴원

-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참고1)
- 휴원 시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자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 재점검

- 어린이집 재개원을 위해 ①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서식3)에 따른 점검 사항 재확인, ②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③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유·무선 확인, ④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사전안내, ⑤ 장기간 미이용 시설(놀이터 등)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 철저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는 어린이집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이행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서식3 참고)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
 - (보고체계 구축)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보건복지부간 보고 체계 구축(매일)
 - (격리시설 마련)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 공간(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격리실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하되,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 (감염병예방 관리현황 확인)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발열체크 및 소독, 환기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시설휴원 시)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긴급돌봄이 원활히 유지되고, 필요시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이 안내되도록 조치 필요 및 지속 모니터링
 -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용 가능, 아이 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기본 방향	정상 등원	휴원 권고 - 긴급보육 실시, 가정 돌봄 권고	휴원 -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권고
□ 접촉의 최소화	- (특별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특별활동) 자제 원칙,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 (특별활동) 금지
	- (외부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외부활동) 자제 원칙, 진행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외부활동)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원칙,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외부인 출입)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서식 1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 등원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발열 체크리스트			
일자		건강관리책임자	(서명)

아 동 명	체크시간	체온	기침여부	조치사항
(예시) ○○○	08:50 14:20	36.5 36.5	부	-
△△△	09:00 14:00	36.5 37.5	부	모에 즉시 유선 통보 하고 원장실에 격리 후 모에 인계(15:00)

※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 의심환자와 접촉 시,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

서식 2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 출근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발열 체크리스트			
일자		건강관리책임자	(서명)

교직원명	체크시간	체온	기침여부	조치사항
(예시) ○○○	08:50	36.5	부	
	14:20	36.5	부	
△△△	09:00	36.5	여	귀가조치
	14:00	37.5		

※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 의심환자와 접촉 시,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

서식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이름 (서명)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1)				
·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사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4)				
· 감염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위생 및 방역 관리(4)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				
·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를 하고 있는가				
· 손세척제와 휴지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붙임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질병관리본부
KCDC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05.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붙임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이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③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두께)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두께)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③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붙임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한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동영상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④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5**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① 일반원칙**

-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② 다중이용시설 사용시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하기
-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③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붙임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3)항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전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사실격리 조치됩니다.
(사생활을 비롯한 지체당할 수 있음)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2020.5.13.



질병관리본부
KCDC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문갑,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2020.5.13.

붙임7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꺾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종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꺾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circ}\text{C} \sim 37.2^{\circ}\text{C}$ 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C 입니다.
- 신진 대사가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C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가율이 낮아 체온이 0.3°C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